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전략적 재정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박정수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최저한세
- 「국제조세조정법」을 중심으로 -
박주철

정책토론포트

2025년도 PEMNA 합동 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불법 체류 외국인의 합구성 세액공제 혜택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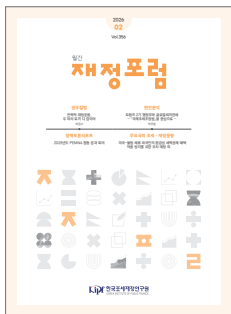


음팩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6년 02월 20일 발행

통권 제35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전략적 재정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박정수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현안분석

10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최저한세
- 「국제조세조정법」을 중심으로 -
박주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토론포트

42

2025년도 PEMNA 합동 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8

미국-불법 체류 외국인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
약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전략적 재정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 parkj@ewha.ac.kr

전략적 재정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고위험 거시경제 환경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환율이 심상치 않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에 버금갈 정도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수익성,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거시경제지표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대미문 규모의 대미(對美)투자 압박, 초고령화, 노인빈곤 해결 등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의무지출의 경직성, 그리고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 압력은 재정 전략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고위험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한 균형이 아닌, '위기관리 및 미래 도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초(超)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에 발표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매년 4% 이상의 만성적 적자를 시현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 가중, 수입 물가 상승, 외환시장 불안정성 증대, 산업 구조조정 비용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 초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무지출(연금, 건강보험, 복지)의 폭발적 증가 및 경직성 심화는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지출 중 이자부담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재정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약진 등으로 반도체, 조선업과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비롯한 세입 기반의 구조적 위축을 낳고 있다. 결국 잠재성장률 반등이 난망한 형국이다.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있지만 규제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

재정당국이 취해야 할 최우선 포지셔닝은 “재정 총량의 안정화”와 “지출의 생산성 혁신”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향후 5년간 중기재정전략

다가오는 중기 시계에서 재정당국이 취해야 할 최우선 포지셔닝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초생산적 투자’의 병행, 즉 “재정 총량의 안정화”와 “지출의 생산성 혁신”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구체적인 3대 전략(The Triple-Strategy)을 생각해보자.

전략 1: 재정 총량의 ‘생존 마지노선’ 사수(Sustainability)가 필요하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현재 계획된 4%대 적자 재정계획을 최소한 2%대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출 상한선(Expenditure Ceiling) 및 재정수지 목표(예: GDP 대비 -3% 이내)를 명시한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의무지출 혁신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 초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조정 및 보험료를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중기재정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당장 실현이 어렵더라도, 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2030년 동안 복지/보건의료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을 과거 5년 평균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전략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에 대해 영기준(Zero-Base)에서 평가하고, 성과 미흡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을 전략 분야에 재배치해야 한다. 정부 계층 간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지금도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보다 특정목적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것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전략 2: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초선택적’ 투자>Selectivity)가 요구된다.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규제 혁신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6대 혁신 분야 중, 규제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 혁신(R&D) 분야, 특히 AI, 바이오, 첨단 제조 등 잠재적 생산성 효과가 즉각적인 분야에 대한 R&D 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연계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에 집중투자하도록 한다. 특히, 고환율/대미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어렵다면, 디지털/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와 직업훈련 개편에 집중하여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에 대응해야 한다.

재정-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핵심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략 3: 위험 관리 및 신뢰도 제고(Stability/Signaling)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환율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여 재정 안정화 기금 또는 예비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예기치 않은 대외 충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Fiscal Buffer)’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정 적자 축소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미래 산업 R&D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아울러 투자 연계(Reform-Investment Link) 혁신방안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두 마리 토끼잡기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회복과 중장기적인 부채 통제 및 재정건전성 확보는 상충될 수 있는 목표이지만, 재정-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핵심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생산성 제고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분야, 즉 정부가 선정한 6대 핵심 분야(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구조개혁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 기반이 확대되어 부채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을
핵심 투자 분야에
재배분해야 한다.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규제 완화, 금융시장 선진화, 공공부문 효율화, 연금 개혁, 교육 시스템 혁신, 노동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점검을 실시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을 핵심 투자 분야에 재배분해야 한다.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를 정비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 재정 투자를 우선하고, 동시에 재정 총량의 안정화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최저한세 - 「국제조세조정법」을 중심으로 -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joocpark@kipf.re.kr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최저한세 - 「국제조세조정법」을 중심으로 -*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이 유난히 잦은 현재의 세계 정세에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국제적 혼돈을 배가시킬 것임은 이미 예측된 바다. 그리고 일부 예측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넘게 국제기구의 노력과 국가 간 협력으로 쌓아왔던 국제질서가 강대국의 정책 변경 앞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본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재편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정책 중 디지털세, 그중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보다는 덜 주목받고 있지만, 기실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그나마 진전을 보였던 글로벌최저한세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법학의 관점에서 양인준(2023)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의 불명확성이 낳은 내재적 해석의 문제와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지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제언하고 있다. 강지현(2024)은 현행 글로벌최저한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결매출액의 산출방법,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결손취급 특례의 신설, 과세분배 방식의 선택 조항과 전환기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함을 밝힌다.

본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재판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정책 중 디지털세, 그중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해 살펴본다.

적용면제 조항의 법률 위임의 명확화,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Janeba and Schjelderup(2023)은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제적 효과와 그 한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국제적 조세 경쟁이 법인세율 조정, 세액 공제,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의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홍병진(2024)은 글로벌최저한세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글로벌최저한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²⁾로 간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조세조정법」의 정비가 시행령 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인지 들여다본다. 둘째, 「국제조세조정법」의 글로벌최저한세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을 전망해 보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본고는 법학적 논증 방식을 채택한 법학 보고서이다. 논증은 국내의 주요 문헌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II장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개관하고, 제III장은 국내 법령의 글로벌최저한세 내용을 살펴며, 제IV장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II 글로벌최저한세 개관

1. 도입 배경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그룹³⁾의 전략과 이를 막으려는 과세당국 사이의 대응은 국제조세 발전의 주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각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 전략을 개발해 왔다. 초기에는 단순히 조세피난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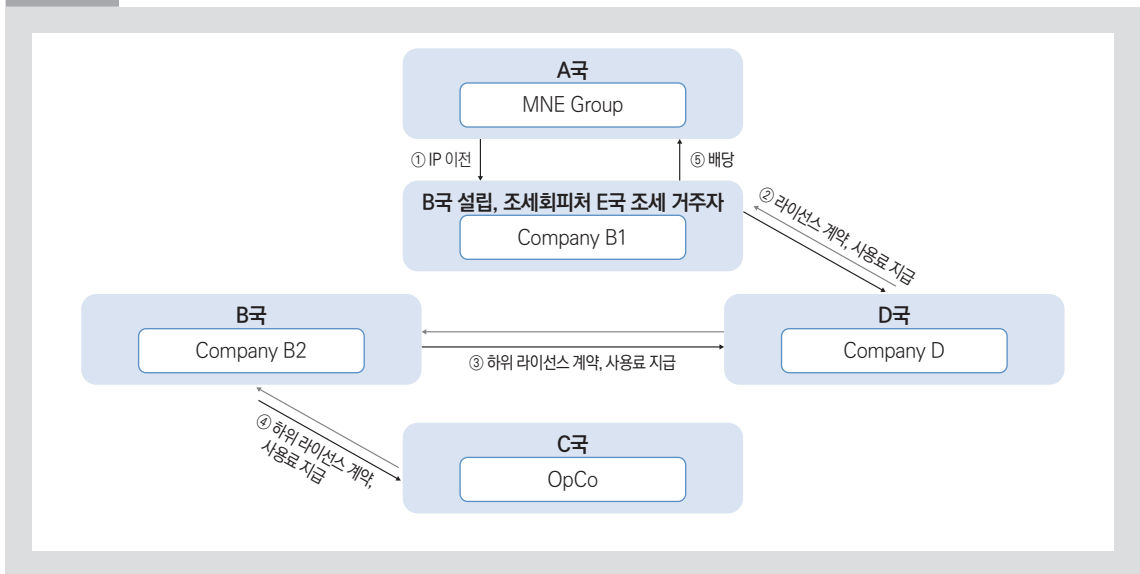
1)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2)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실효세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금액을 조정하는 20가지 항목 중 하나이다(「국제조세조정법」 제63조 [별표] 제12호 참조).

3) 「국제조세조정법」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다국적기업그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1조 제1항 제4호), 본고의 다국적기업그룹 또한 같은 개념임을 밝힌다.

유명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복잡한 설계를 구상하게 된다. 예컨대 애플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 아이리시’나 여기에 구글이 일부 전략을 덧붙였다고 알려진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 이하 DIDS라 한다)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중 DIDS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촉발한 대표적인 조세회피 설계 방식으로 통합적 조세 전략 구조라고 불리는데, 그 방식은 [그림 1]과 같다.⁴⁾

그림 1 무형자산 이전과 2단계 구조



출처: 홍성훈 외(2017), p. 38

통합적 조세 전략 구조는 A국의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C국의 운영회사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이용 소득의 유효세율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E국 및 D국, B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⁵⁾ 조세피난처 E국에서 통제되는 B1 회사는 100% 출자를 통해 B2 회사를 설립하고, B1 회사가 다국적기업그룹과 지식재산권 이전거래를 체결한다.⁶⁾ B1 회사는 다시 D국에 자회사로 D 회사를 설립하고, B1 회사는 D 회사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시 D 회사는 B2 회사와 지식재산권 하위

4) 홍성훈 외(2017), pp. 37-39

5) 이하의 내용은 홍성훈 외(2017), pp. 37-40을 참조하였다.

6) 지식재산권 이전은 정상가격 조건으로 일시 지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용을 분담하는 계약(Cost Sharing Agreement)를 체결한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2 회사는 C국의 운영회사(그림의 OpCo)와 지식재산권 하위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B1 회사의 소득은 다국적기업그룹에 배당금으로 분배가 된다.

이러한 구조를 조세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A국은 정상가격 원칙하에 이전가격이 결정이 되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분담 계약을 통해 조세 부담을 덜게 된다. 만일, ① D국은 B1 회사에 지급하는 사용료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사용료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② B국이 B1 회사의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B1 회사로 지급된 소득은 D국, B국, E국 어디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B2 회사와 D 회사는 사용료 소득과 비용의 차액에 대해서만 B국과 D국에서 각각 과세될 뿐이다. 한편 C국은 운영회사의 영업소득에서 B2 회사에 지급한 사용료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되며, 사용료 지급금에 대한 C국의 원천징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B1 회사가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경영참여면제제도 적용으로 A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⁷⁾ 이상의 내용을 구글의 사례에 적용하면, A국은 미국, B국은 아일랜드, C국은 EU 회원국들, D국은 네덜란드, E국은 버뮤다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⁸⁾

2. 국제사회 진행 경과

2015년 OECD와 G20 주도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 한다)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고,⁹⁾ 2016년 최종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회의체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라 한다)가 구성된다.¹⁰⁾

IF는 2020년 10월 최종 합의한 디지털세¹¹⁾ 중 필라 2(Pillar 2)는 글로벌최저한세를 15%로 정하고 과세권 배분방법으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과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을 각국이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7) 본 단락의 내용은 홍성훈 외(2017), pp. 39~40을 참조하였다.

8) 스타벅스, 아마존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세회피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있자, 아일랜드는 2020년까지 유예를 하고 세제를 정비하였고 이러한 조세회피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9) 최종보고서는 15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로벌최저한세는 첫 번째, 실행 계획(Action 1)인 "디지털 경제하에서 조세쟁점 대응(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 Economy)" 두 번째, 부분 계획(pillar 2)이다.

10) 2025년 12월 기준 148개의 국가 또는 관할권이 참여하고 있다.

11) 디지털세 논의는 pillar 1과 pillar 2로 구분된다.

IF는 2021년 12월 필라 2에 대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모델규정’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모델규정은 국제적 합의 사항을 각국이 국내법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안한 것이다. IF의 최종 합의 사항은 ‘공통접근 방식(Common Approach)’으로 회원국에 법적인 의무는 없다.¹²⁾ 따라서 회원국이 모델규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도입하고자 할 때는 모델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별 국가가 모델규정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제화를 선행한 다른 국가로 과세권이 넘어갈 수 있다. IF가 공통접근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 내용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원국이
모델규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도입하고자 할 때는
모델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표 1 글로벌최저한세 경과

구분	경과
2015. 10.	- BEPS 프로젝트 Action 1 채택
2016. 2.	-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구축
2019. 10.	-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논의
2020. 10.	- 디지털세 pillar 1, pillar 2 Blueprint 승인
2021. 10.	- pillar 1, pillar 2 최종 합의문 채택
2021. 12.	-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승인 및 발표
2022. 3.	-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발표
2023. 2.-2024. 6.	- pillar 2 행정지침 1차, 2차, 3차, 4차 발표

출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작성

3. 글로벌최저한세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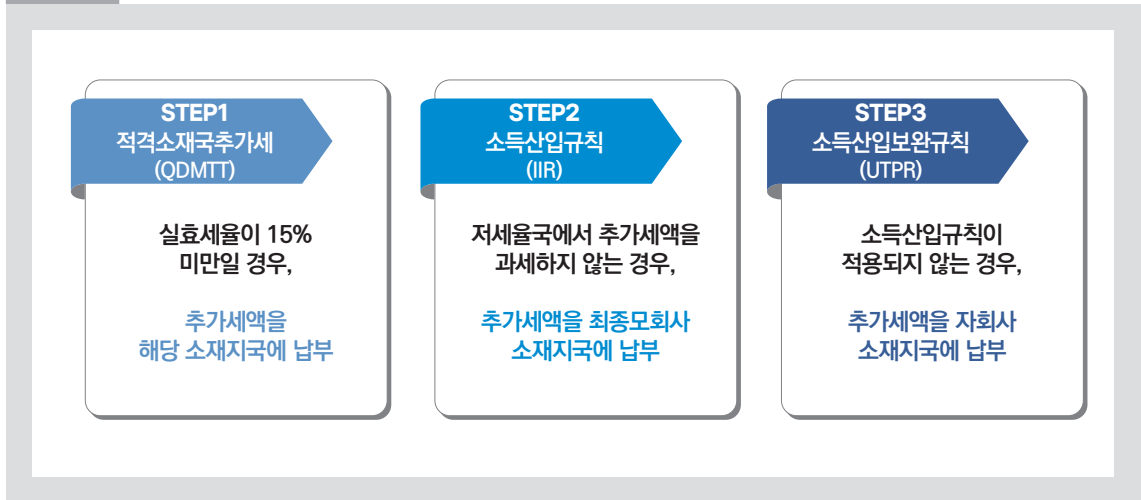
글로벌최저한세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Ⅲ장에서 살피고 여기에서는 대강의 줄기만을 짚어본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자본수출국 세금을 회피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세제다.¹³⁾ 법인세 실효세율 하한선 15%에 미달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세액의 납부를 강제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과세권 배분의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12)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3) 양인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조세학술논집』 제39집 제2호, 2023, p. 191

수 있는데, [그림 2]에서와 같이 적격소재국추가세, 소득산입규칙,¹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순서대로 적용된다.

그림 2 과세권 배분 규칙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5. 8. 21.

적격소재국추가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 세계에 구성기업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존재하면, 우선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만일 저율과세구성기업이 국내법으로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된다.

소득산입규칙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려는 국가에 선행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마련된 제도다. 즉 소득산입규칙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최종모기업에게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된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모회사 외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적격소재국추가세와 소득산입규칙이 타국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 소득산입보완규칙은 누군가 이미 빼앗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4) 소득산입규칙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라 한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로는 이창희·김정홍·윤지현, 『국제조세법』 제3판, 박영사, 2023, pp. 898-899; 배효정,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조세학술논집』 제41집, 2025, p. 64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권을 배분할 때 개별 국가가 본인의 과세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OECD 주도로 설계된 국제질서에 편입하여 국내법에 3단계 과세권 배분 방식을 입법하는 것이다.¹⁵⁾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저세율구성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그룹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방식은 불가능하거나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IF는 첫 번째 방식, 즉 전 세계 국가가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에 편입하기를 암묵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EU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EU 소속 회원국들 중심으로 독자적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자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4. 미국 행정부의 동향

미국은 OECD 주도의 디지털세 논의 초기부터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었다.¹⁶⁾ 애초에 디지털세 논의가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의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의 국제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당연해 보인다. 다만, 미국은 2018년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EU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EU 소속 회원국들 중심으로 독자적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자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미국의 참여에도 현행 디지털세의 틀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9년에 프랑스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공식화하자 당시 트럼프 정부는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¹⁷⁾의 보복 조치를 위해 내국기업의 차별적 취급을 조사한 적이 있다. 2020년에도 EU 회원국 일부와 영국, 브라질 등 11개국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은 마찬가지로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차별 취급을 조사한 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디지털세 논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디지털세 기본 구조의 설계와 최종 합의문의 채택, 모델규정의 마련, 주석서 제정이 모두 바이든 정부의 협조와 승인하에서 진행되었다. IF의 4차례에 걸친 행정지침 제정 또한 바이든 정부 시절 이루어진 성과물이다.¹⁸⁾

15) 구체적으로 소재국추가세와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OECD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적격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16) 강지현,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에 따른 국내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1, pp. 64-65

17) 미국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18) 이러한 합의가 곧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세에 관한 후호적 입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미국은 일관되게 디지털세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미국 입법부의 비준 거부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 배효정(2025), pp. 63-68 참조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이행하는 국가에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일에 미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폐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OECD의 글로벌 조세 합의」(OECD Global Tax Deal)와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존 국제조세 논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위해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였다.¹⁹⁾ 나아가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이행하는 국가에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여, 조세조약을 위반한 국가, 불평등한 역외 과세나 세법을 적용하는 국가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²⁰⁾

III 국내 제도

1. 개관

우리나라는 모델규정을 따라 2022년 12월 31일 「국제조세조정법」에 별도로 제5장을 만들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다. 이후 2023년 12월 29일과 2024년 2월 29일 두 차례에 걸친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신속한 도입인데, 성급한 조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²¹⁾ 과세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병존한다.²²⁾ 법령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지만²³⁾ 큰 줄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7단계로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19) 트럼프 2기 행정부는 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정책 입안 권한을 심히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20) 미국은 특정 국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거나 미국 시민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발견된 경우, 「내국세법」 제891조나 「무역법」 제301조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1) 『한국경제』, 「글로벌최저한세 '과속입법' ... 부메랑 되나」, 2023. 1. 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1791821>, 검색일자: 2025. 9. 3.

22)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참조, 2023. 1. 18., 다국적기업 자회사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권을 의미한다.

23) 글로벌최저한세의 복잡성이 추상적, 불확정적 개념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양인준(2023), p. 216 참조

그림 3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방식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모델의 내용을 필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

우선 「국제조세조정법」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 잠식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²⁴⁾ 아울러 글로벌최저한세의 법적 성질이 법인세임을 분명히 한다.²⁵⁾ 이것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 배분액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 조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연결기업, 그에 딸린 고정사업장이 포함된다. 결국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와 그 고정사업장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²⁶⁾

24) 「국제조세조정법」 제60조

25) 「국제조세조정법」 제63조

26) 양인준(2023), p. 194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과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이라 하는데, 모델규정과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의 최소 단위가 구성기업이다.

2.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 소재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그룹을 의미한다.²⁷⁾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과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이라 하는데,²⁸⁾ 모델규정과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의 최소 단위가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으로 최종모기업, 연결기업, 그 기업을 본사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때 각 고정사업장은 본사나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 다른 별개 기업으로 보게 된다.²⁹⁾

「국제조세조정법」은 모기업을 최종모기업,³⁰⁾ 중간모기업,³¹⁾ 부분소유모기업,³²⁾ 으로 구분한다. 최종모기업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³³⁾ 첫째는 일반적인 형태로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모기업이다. 둘째는 하나의 법인과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의 모기업으로, 이 경우 본사³⁴⁾가 최종모기업이 된다. 최종모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하지만, 다른 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할 수 없다.³⁵⁾

중간모기업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의미한다.³⁶⁾ 부분소유모기업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이익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³⁷⁾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은 실질적 관리 장소, 설립 장소,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국가이다.³⁸⁾

27) 「국제조세조정법」 제1항 제4호

28) 「국제조세조정법」 제1항 제9호

29)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고정사업장의 과세 취급을 「법인세법」 적용 목적상 외국에 소재하는 자점이나 국외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0) 「국제조세조정법」 제1항 제6호

31) 「국제조세조정법」 제1항 제7호

32) 「국제조세조정법」 제1항 제8호

33) 「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제6호

34)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을 지배 통제하는 외국 기업을 '본점'이라고 칭하나 「국제조세조정법」은 '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5) 「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제6호

36) 「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제7호

37) 「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제8호

38) 「국제조세조정법」 제64조 제1항 제1호

3. 과세 방식

가. 적용 대상의 식별 및 소득의 배분 - 1단계 및 2단계

글로벌최소한세를 과세하려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식별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법」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³⁹⁾가 넘는다면 적용 대상기업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금액 단위는 유로이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표시되는 기준 연결매출액 규모는 매해 변동될 수 있다.⁴¹⁾ 글로벌최저한세 금액 기준은 이전가격 세제에서 도입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준과 같은데,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작성 대상 기업으로 한정된 것이다.⁴²⁾ 아래 <예시 I>의 사례는 202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국제조세조정법」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가 넘는다면 적용 대상기업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예시 I

A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1개의 고정사업장이 있다. A기업의 연결매출액은 2020년 7.8억유로, 2021년 4.7억유로, 2022년 6.4억유로, 2023년 7.7억유로라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가?

» 1개 이상의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의 사업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이므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을 식별할 때 유념할 점은 개별 구성기업 매출실적이 아닌 다국적기업 그룹 단위의 매출실적을 본다는 점이다.⁴³⁾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는 구성기업에서 배제된다.⁴⁴⁾ 당연히 이들 조직에 대해서 행정적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 다국적기업그룹이 식별되면, 그룹 내 회계상 순손익을 계상하는 모든 구성기업을 식별한다. 이후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식별된 개별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게 된다.

39) 한화로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는 기업그룹이다.

40) 「국제조세조정법」 제62조 제1항

41) 「국제조세조정법」 제62조 제2항

42) 양인준(2023), p. 193

43) 다만 「국제조세조정법」은 최근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적용 대상의 변동성을 낮추었다.

44) 「국제조세조정법」 제62조 제3항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질적 첫 단계는
실효세율에 적용될
과세표준 금액, 즉
글로벌최저한세소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 3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질적 첫 단계는 실효세율에 적용될 과세표준 금액, 즉 글로벌최저한세소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⁴⁵⁾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은 소재국 각 구성기업의 사업연도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그리고 조정대상조세액은 소재국 각 구성기업이 납부한 소득과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모두 법에서 별도로 마련한 개념으로 실효세율 계산에서 전자는 분모, 후자는 분자가 된다.

$$\text{실효세율} = [\text{조정대상조세액} / \text{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times 100$$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개별 국가가 고유한 세무회계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이 조세 피난의 결과를 온전히 발라내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정한다. 개별 국가가 적용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면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모두 고려한 법률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⁴⁶⁾ 법에 의하면 개별 국가가 결정하는 과세표준은 새로운 조정을 거치게 된다. 조정의 방법은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회계상 순손익⁴⁷⁾에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⁴⁸⁾ 조정사항은 2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⁴⁹⁾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원칙적으로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못한다.⁵⁰⁾ 이는 중복으로 과세표준을 삼으면 글로벌최저한세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⁵¹⁾

45) 「국제조세조정법」 제66조

46) 유사한 취지의 의견으로는 양인준(2023), p. 195 참조

47) 회계상 순손익(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은 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거래를 포함해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법인세 비용을 포함하여 구성기업에 대해 산정된 소득 또는 결손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은 기업 그룹 내부거래에 기인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제거하는 연결조정을 수행하기 전 기업집단 구성기업의 세후순이익 손실에서 시작된다.

48) 「국제조세조정법」 제66조. 과세소득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맞긴다는 의미라고 한다. 양인준(2023), p. 195

4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참조. 구체적 조정 항목은 ① 순조세비용의 가산 ② 배당수익의 차감 ③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④ 지분손익의 조정 ⑤ 재평가손익의 조정 ⑥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⑦ 연금손익의 조정 ⑧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⑨ 그룹 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⑩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⑪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⑫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⑬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 ⑭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⑮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⑯ 실현주익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⑰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⑱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⑲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⑳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㉑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 ㉒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㉓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㉔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㉕ 국제해운소득 ㉖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등이다.

50) 「국제조세조정법」 제66조 제5항

51) 양인준(2023), p. 196

소재국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소득 합계액 - 소재국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결손 합계액

앞서 언급하였듯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개별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⁵²⁾ 계산한 금액이 음수라면 당연히 실효세율은 0이 된다.⁵³⁾ 계산한 결과 그 금액이 양수이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음수이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다. 결손 금액은 같은 소재국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상계된다.⁵⁴⁾ 이렇게 계산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실효세율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것이다.

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4단계

다음으로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분자, 즉 글로벌최저한세 관점에서 과세표준액 대비 세금을 실제로 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법은 조정대상조세라고 부른다.⁵⁵⁾ 조정대상조세는 특정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일정한 조정사항⁵⁶⁾을 반영해서 계산한 금액이다.⁵⁷⁾ 기술적으로 구성기업의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포함한 일정한 조정을 거쳐서 산출한다고 보면 된다.⁵⁸⁾

기술적으로
구성기업의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포함한
일정한 조정을 거쳐서
산출한다고
보면 된다.

52) 「국제조세조정법」 제69조 제2항 제2호

53) 「국제조세조정법」 제69조 제3항

54)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된다.

55) 「국제조세조정법」 제67조

56)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10조 참조. 구체적 조정항목은 ①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②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 자산의 설정 또는 사용 ③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④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⑤ 적격 소유 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해택 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⑦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 ⑧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 ⑨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⑪ 신고 후 조정 ⑫ 총 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의 자산처분손익 관련 대상조세 ⑬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⑭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⑮ 간주분배세액 ⑯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⑰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 ⑱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⑲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 ⑳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이다.

57) 「국제조세조정법」 제67조 제1항

58) 「국제조세조정법」 제67조 제2항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가별로 고유한 세무회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가 간 실효세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 5단계

실효세율은 글로벌최저한세율 15%와 비교하여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얼마를 거두어들였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언급했듯이 실효세율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별 실효세율을 국가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⁵⁹⁾ 글로벌최저한세가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얼마를 냈는지 따진 후에 추가세액을 과세하자는 것이 도입 목적이므로 실효세율을 국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구성 요소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액, 조정대상조세액이 모두 국가 단위로 계산함은 당연하다.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가별로 고유한 세무회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가 간 실효세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⁰⁾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글로벌최저한세율 15% 아래라면 그 비율의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래의 <예시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그룹 X의 구성기업 C, D의 실효세율은 글로벌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므로 한국은 저율과세구성기업 C와 D의 소재지국이 된다.⁶¹⁾

예시 II

다국적기업그룹 X는 미국에 최종모기업 A, 일본에 구성기업 B, 한국에 구성기업 C와 구성기업 D를 두고 있다. 각 국가의 조정대상조세액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다음과 같을 때 각 국가의 실효세율은 얼마인가?

구 분	조정대상조세액	글로벌최저한세소득액	글로벌최저한세결손액
미국	170(A:170)	1,000(A:1,000)	10(A:10)
일본	110(B:110)	500(B:500)	20(B:20)
한국	300(C:200+D:100)	5,000(C:2,000+D:3,000)	80(C:50+D:30)

» 실효세율은 개별 국가별로 계산하므로 미국은 17.17%, 일본은 22.91%, 한국은 6.09%(A:10.25%, B:3.36%)이다. 결국 한국은 '저율과세구성기업' C와 D의 소재지국이 된다.

59) 「국제조세조정법」 제69조 제1항

60)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05조

61) 한국이 과세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세권은 다음 단계에서 결정된다.

실효세율이 국가 단위로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구성기업 소재국가의 추가세액 또한 국가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추가세액 계산은 소재국 추가세액 비율에 초과이익금액을 곱하여 여기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한 후 마지막으로 적격소재국추가세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⁶²⁾

$$[\text{추가세액비율} \times \text{초과이익금액}] + \text{당기추가세액가산액} - \text{적격소재국추가세액}$$

실효세율이 국가 단위로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구성기업 소재국가의 추가세액 또한 국가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추가세액비율은 최저한세율 15%에서 실효세율을 뺀 비율이고⁶³⁾ 초과이익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⁶⁴⁾ 실질기반제외소득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인건비나 유형자산 장부가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차감한다는 것은 투자된 노동력이나 자본을 따졌을 때 그에 부합하는 정상이윤을 뺀 금액만 초과이윤으로 삼아 글로벌최저한세를 걷겠다는 의미다.⁶⁵⁾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계산할 때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을 말한다.⁶⁶⁾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방식의 간단한 사례는 아래의 <예시 III>과 같다.

예시 III

위 <예시 II>를 전제한다. 한국의 실효세율이 5.6%이고 구성기업 C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150, 구성기업 D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250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이 갖는 추가세액 과세권은 얼마인가? 단, C와 D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합계액은 50이고 적격소재국추가세 세액은 없다.

▶ 추가세액 비율은 9.4%(15%-5.6%), 초과이익 금액은 4,600(5,000-400)이므로 한국이 갖는 추가세액 금액은 482.4(432.4 + 50 - 0)이다.

<예시 III>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 세액을 0으로 가정하지만, 만약 해당 세액이 있다면 추가세액 산정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적격소재국추가세는 구성기업 소재지국 국내법에서 마련한 최저한세 제도로, 소득산입규칙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통해 과세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이

62) 「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1항

63) 「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2항

64) 「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3항

65)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방식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은 모델규정 제5.3.2조를 반영한 것이다.

66) 「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4항

소재국가
추가세액이
산출되면
개별 구성기업에게
추가세액을
안분한다.

취할 수 있는 내국법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⁶⁷⁾

소재국가 추가세액이 산출되면 개별 구성기업에게 추가세액을 안분한다. 개별 구성기업에 안분될 추가세액의 계산식은 소재국 추가세액에 소재국 구성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 전체에서 개별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소재국 추가세액} \times \text{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text{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

상기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추가세액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소재하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추가세액이다. 즉 산출한 추가세액은 구성기업 자체의 추가세액이나 다국적기업그룹 전체의 추가세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앞서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계산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는데, 개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분배를 위한 계산 방식의 사례는 <예시 IV>와 같다.

예시 IV

위 <예시 II> 및 <예시 III>을 전제한다. 한국의 구성기업 C와 구성기업 D의 추가세액은 각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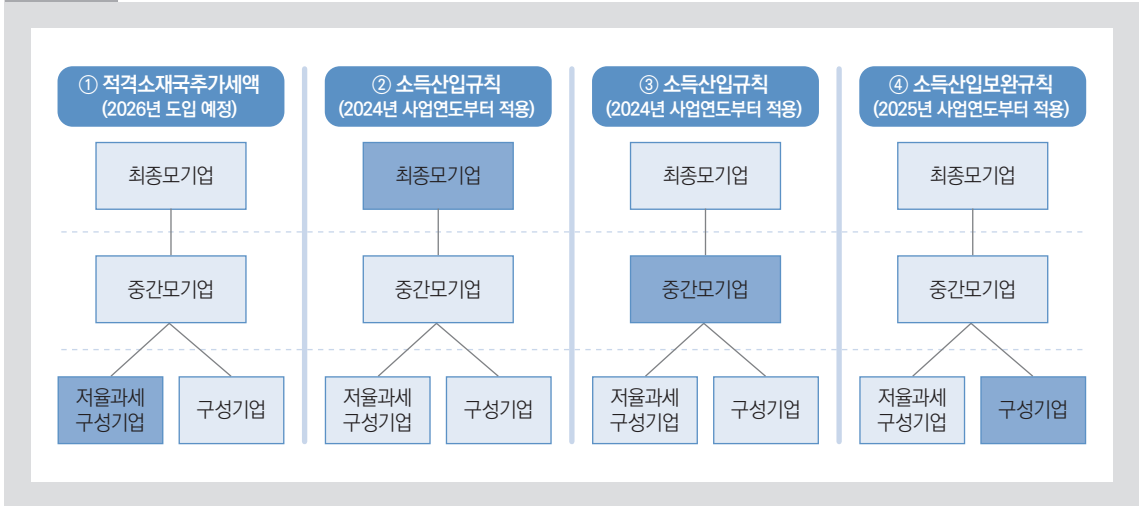
» 구성기업 C의 추가세액은 $192.96(482.4 \times 2,000 / 5,000)$, 구성기업 D의 추가세액은 $289.44(482.4 \times 3,000 / 5,000)$ 이다.

마. 추가세액 배분 절차 - 6단계

기업이 소재하는 개별 국가마다 추가세액을 결정하고 나면 해당 금액을 누구에게 어떠한 순서로 과세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모델규정은 [그림 3]과 같이 저울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①), 최종모기업 소재지국(②), 중간모기업의 소재지국(③), 제3의 구성기업 소재지국(④) 순서로 정하고 있다.

67) 「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5항

그림 3 과세권 배분 규칙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5. 8. 21.

①은 적격소재국추가세, ②, ③은 소득산입규칙, ④는 소득산입보완규칙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법」은 모델규정을 따라 적격소재국추가세,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도입하였다.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1월 1일,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 1월 1일, 소재국추가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⁶⁸⁾

1) 적격소재국추가세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23일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⁶⁹⁾ 이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내국추가세액을 우리나라에 먼저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비율에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만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있다면 계산된 금액에 가산액을 더하여 산정하게 된다.⁷⁰⁾

$$(\text{내국추가세비율} \times \text{국내 초과이익 금액}) + \text{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68) 다만 전환기 적용면제에 따라 2026년까지 유예는 가능하다(「국제조세조정법」 제80조).

69) 법률상 명칭은 '내국추가세'이다.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

70)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의6

「국제조세조정법」은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 저세율 구성기업에 소유 지분을 가진 모기업 소재지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득산입규칙

「국제조세조정법」은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 저세율 구성기업에 소유 지분을 가진 모기업 소재지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¹⁾ 즉 추가세액 중 저율과세 구성기업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최종모회사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최종모기업에 귀속된 비율만큼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종모기업이 항상 저율과세구성기업 전체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배 비율만큼만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시 V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에 최종모기업 A, 독일에 중간모기업 B, 멕시코에 구성기업 C를 두고 있다. C가 '저율과세구성기업'이라고 할 때 과세권 배분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⁷²⁾

» 멕시코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한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하고 남은 추가세액이 있다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한 독일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산입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되었다면 그 혜택은 최종모기업이 받은 것으로 보아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과세권을 행사했음에도 남은 추가세액이 있다면 차상위 중간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⁷³⁾

3) 소득산입보완규칙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후에도 배분되지 않은 추가세액이 있다면, 다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각 구성기업⁷⁴⁾이 속한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내게 되는데, 법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추가세액을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⁷⁵⁾

71) 「국제조세조정법」 제72조

72) 단 독일이 도입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OECD로부터 적격성을 승인받았다고 가정한다.

73)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 제3항, 제4항

74) 중간모기업을 포함한다.

75)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 제1항

예시 VI

앞선 <예시 II>와 같이 그리스에 최종모기업 A, 일본에 구성기업 B, 한국에 구성기업 C, 구성기업 D를 두고 있다. 한국이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이라고 할 때 과세권 배분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은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적격소재국추가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리스가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남은 추가세액이 있다면 일본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추가세액 합계액이 정해지면 그중 구성기업 소재국별로 배분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결정된 배분액에서 각 국내 구성기업 배분액이 얼마인지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⁷⁶⁾ 소재지국의 배분액을 정할 때 추가세액에 일정한 국내 배분 비율을 곱하는데, 다국적기업그룹 차원에서 소재지국 구성기업의 인건비 비중과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비중을 균등하게 고려해서 결정한다.^{77) 78)}

$$\left[\frac{\text{각 국내 구성기업 종업원수}}{\text{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79)} \text{ 종업원수}} \times 50\% \right] + \left[\frac{\text{국내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text{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times 50\% \right]$$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소재지국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사례는 <예시 VII>과 같다.

예시 VII

다국적기업그룹 X는 미국에 최종모회사 A, 한국에 구성기업 B, 일본에 구성기업 C, 멕시코에 구성기업 D가 있다. 구성기업 D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 B의 종업원은 100명, 유형자산 장부자산 합계액은 50억, 구성기업 C의 종업원은 80명, 장부자산 합계액은 100억이라고 가정하자. 추가세액은 100억이고 미국은 소득산입규칙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추가세액은 얼마인가?⁸⁰⁾

▶ 한국의 추가세액 배분 비율은 52.8%(100/180×0.5+50/150×0.5), 일본의 배분비율은 48.2%(80/180×0.5+100/150×0.5)이므로 추가세액 중 한국은 52.8억 일본은 48.2억을 과세할 수 있다.

소재지국의 배분액을 정할 때 추가세액에 일정한 국내 배분 비율을 곱하는데, 다국적기업그룹 차원에서 소재지국 구성기업의 인건비 비중과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비중을 균등하게 고려해서 결정한다.

76)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 제5항

77)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 제4항

78)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 제5항. 투자된 자본이나 인력 등을 고려해 국내 혹은 각 국내 구성기업에 맞는 정상이윤 비율만큼 보충적 추가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최저한세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79) 적격소득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80) <예시 VI>에서 한국과 일본이 OECD로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격성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한다.

글로벌최저한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행한 세액계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바. 세무행정 절차

글로벌최저한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행한 세액 계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법은 국내 구성기업에게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¹⁾ 납세준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반드시 국내 구성기업마다 위 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같은 그룹 내 다른 국내 구성기업이 대신 제출해도 무방하다.⁸²⁾ 같은 맥락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외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를 해당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더라도 역시 국내에서 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⁸³⁾

국내 구성기업이 추가세액 배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⁸⁴⁾ 국내 구성기업은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추가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⁸⁵⁾ 그리고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⁸⁶⁾

국내 구성기업이 신고를 태만하면 결정이나 경정을 통해 추가세액 배분액을 확정하고 이를 징수하게 된다.⁸⁷⁾ 만일 추가세액이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면 절차의 보장을 위해 국내 구성기업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⁸⁸⁾ 추가세액 배분액을 국내 구성기업이 납부하지 않으면 여타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다.⁸⁹⁾

81) 「국제조세조정법」 제83조 제1항

82) 「국제조세조정법」 제83조 제2항

83) 「국제조세조정법」 제83조 제3항

84) 「국제조세조정법」 제84조 제1항. 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최초 적용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5) 「국제조세조정법」 제84조 제2항

86) 「국제조세조정법」 제84조 제4항

87) 「국제조세조정법」 제85조 제1항, 제2항

88) 「국제조세조정법」 제85조 제8항

89) 「국제조세조정법」 제85조 제9항

IV 시사점-전망과 정책적 대응

1. 전망 – 미국의 세제와 관계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기업그룹이 저세율 해외 소득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를 수립한 국가이다.⁹⁰⁾ 이러한 세제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것이 많은데, 「글로벌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 과세」⁹¹⁾(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이하 ‘GILTI’라 한다),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공제」⁹²⁾(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이하 ‘FDII’라 한다), 「세원잠식 남용방지세」⁹³⁾(Base Erosion Anti-Abuse Tax, 이하 ‘BEAT’라 한다)가 대표적이다.⁹⁴⁾ GILTI, FDII, BEAT는 도입 당시 참여면제제도와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의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원잠식 방지 조치로 도입되었다.⁹⁵⁾

미국이 자국의 다국적기업그룹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한 CFC 세제는 글로벌최저한세와 부딪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⁹⁶⁾ 우선 글로벌최저한세가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 미국의 CFC 세제의 과세 대상과 일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⁹⁷⁾ 아울러 미국이 CFC 세제를 통하여 추가 과세를 한다고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기업그룹이
저세율 해외 소득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제도를
수립한 국가이다.

90) 미국 세제의 역사와 내용에 관해서는 배효정(2025), pp. 44-62 참조

91) GILTI는 해외자회사 소득 중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GILTI)의 50%를 모기업의 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세율국에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통해 미국 내 소득을 이전하고 해외 자회사에 유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재정포럼」, 2018년 1월호, 2018, p. 79) GILTI의 세율은 10.5%인데, 80% 외국납부세액 공제율까지 고려하면 최대 13.5%까지 증가할 수 있다(Adam N. Michel, "Bold International Tax Reforms to Counteract the OECD Global Tax," *CATO Policy Analysis*, No. 968, 2024, p. 8. 참조).

92) FDII는 해외의 무형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과세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져온 무형자산을 해외에 판매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 37.5% 법인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해외수익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이 공제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21%의 법인세율이 13.125%의 실효세율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배효정(2025), p. 55 참조

93) BEAT는 이전가격 조정, 부채이전,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방식을 활용해 다국적기업그룹이 해외 자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미국 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에 해당한다. Daniel Shaviro, "What Are Minimum Taxes, and Why Might One Favor or Disfavor Them?", *Virginia Tax Review*, pp. 413-414. 미국에서 창출한 연 매출 5억달러를 초과하고 세원 잠식을(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산출시 적용받은 총 공제액 대비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아 얻은 조세혜택 금액)이 3%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공제 처리된 국외 관계사 지급 금액을 다시 합산한 조정과세 소득에 최소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p. 42).

94)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제정을 통해 Net CFC Tested Income(NCTI) 제도를 도입하고 GILTI 세제를 개편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NCTI 제도 도입 이전의 논의이며, NCTI와 글로벌최저한세의 관계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95) Adam N. Michel, *op. cit.*, pp. 8-9

96) 배효정(2025), p. 63

97) 이창희(2022), pp. 77-78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면 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여도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여 미국 밖 특정 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즉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면 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⁹⁸⁾

예시 VIII

다국적기업그룹 X는 미국에 최종모회사 A, 한국에 구성기업 B, 멕시코에 구성기업 C가 있다. 구성기업 C가 '저율과세구성기업'이라면,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아래에서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은 누가 갖는가?⁹⁹⁾

» ① 멕시코는 소재국추가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1단계 과세권이 없다. ② 미국은 국제적 디지털세 논의에서 이탈하여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2단계 과세권이 없다. ③ 한국은 국내법에 정비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3단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기 <예시 VIII>과 같이 제3국이 적격소재국추가세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활용하여 미국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OECD 국제조세 논의에서 이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⁰⁰⁾ 향후 미국은 자체적으로 자국 세제를 개편하거나,¹⁰¹⁾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자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¹⁰²⁾

2. 단기적 관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에 신중한 접근 필요

현행의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통해 미국의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세제를 통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여도 다른 소재지국에서 저세율구성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이행하는 일은 법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자국기업의

98) 배효정(2025), p. 66
 99) 한국이 OECD로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격성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한다.
 10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와 같은 의사를 이미 천명했다.
 101) 미국의 입장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에 대응한 GILTI, BEAT 등 CFC 세제를 자본유입의 정책적 활용 목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으로는 배효정(2025), pp. 67-70 참조
 102) 다만 외관상 OECD와 협의하여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세액 징수를 「내국세법」 제891조의 차별적 과세나 역외 과세로 판단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에 적정 세금의 2배를 과세할 수 있다.¹⁰³⁾ 한편으로 「통상법」 제301조의 추가세액 과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행위로 판단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우회적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¹⁰⁴⁾ 미국과 외교·통상적 마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협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권의 단독 행사는 통상(通商)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정치적·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중기적 관점: 자체 법령의 정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비하여 이행을 앞둔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기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미국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지만, 실제 미국을 제외한 국가만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¹⁰⁵⁾ 그러므로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비는 추후 생각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학계와 실무에서 「국제조세조정법」이 마련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에는 회계 규범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¹⁰⁶⁾ 고정사업장의 일체설(총괄주의)¹⁰⁷⁾에 기인한 법체계의 부정합성,¹⁰⁸⁾ 통화 환산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문제, 소재지 판정 기준의 불명확성,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연결매출액 산출 방법의 불명확,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불명확¹⁰⁹⁾ 등이 포함된다.¹¹⁰⁾ 특별히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비하여 이행을
앞둔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기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103) IRC §891(Doubling of rates of tax on citizens and corporations of certain foreign countries) 제1문

104)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문헌으로는 양인준(2023), pp. 220-222; 배효정(2025), p. 66

105) 「조선일보」, 「한국 법인세수 늘려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美 반대로 물건너가나」, 2025. 7. 2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22/USLYFFYMBVD6BMQEV5XXANTUDM/ 검색일자: 2025. 9. 2. 참조

106) 이상 양인준(2023), pp. 209-222; 윤준석(2024), pp. 230-231; 배효정(2025), p. 73 등 참조

107) 일체설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원천지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원천지국 내에서 발생한 본사의 직접 거래 소득까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108)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등 참조

109) 강지현,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40집, 2024, p. 43

110) 이경근, 「최근 국제조세 규범 제정 동향과 미국의 국제조세 정책 분석」, 『계간 세무사』, 2025, pp. 25-26은 현재의 국제조세 환경에서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미국과
EU 중심의
국제조세 재편
움직임이
진행 중이므로
당분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였는데, 2025년 세계개편안에 반영하여¹¹¹⁾ 입법화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장기적 관점: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 주시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미국과 EU 중심의 국제조세 재편 움직임이 진행 중이므로 당분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26일 G7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899조¹¹²⁾를 철회하기로 하였다.¹¹³⁾ 아울러 EU 스스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 방식을 수정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¹¹⁴⁾

2026년 1월 5일 OECD가 승인한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패키지(Side by Side Package)는 그러한 결과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당 병행 패키지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2026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유형의 실물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인정하였다. 둘째는, 2026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특정 국가의 자체 제도를 병행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를 인정하였다.¹¹⁵⁾ 셋째는, 영구적 실효세율 적용 간소화 제도를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는, 기존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을 1년 연장하였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국제사회와 미국 사이에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협의는 계속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11) 기획재정부, 『2025년 세계개편안 상세본』, pp. 81-88

112)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업보완규칙 행사 국가에 대한 보복과세 근거 규정이다.

113) 미국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제899조를 철회했다고 보복의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국세법」 제891조와 「통상법」 제301조는 여전히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114) 「머니투데이」, 「트럼프 달래기 나선 EU, '15% 법인세' 지침 개정 검토」, 2025. 4. 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609581799534>, 검색일자: 2025. 9. 8., 기사에 따르면 EU는 글로벌최저한세와 미국의 GILTI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115) 병행 체계는 ① 특정 국가의 국내 및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OECD가 의도한 글로벌최저한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소득산업규칙과 소득산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적격 병행제도(Side-by-Side Safe Harbour)와 ②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OECD가 의도한 글로벌최저한세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소득산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최종 모회사 소재국 적용면제제도(UPE Safe Harbour)로 구성되어 있다. 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국내 소득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 20% 이상과 최저한세율 15% 이상을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에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이 되든,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주체는 OECD 중심의 국제사회와 미국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지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규범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국내법에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국제사회 정책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이 되든,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견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수립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였다.¹¹⁶⁾ 글로벌최저한세를 국내법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사회가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제적 디지털세 과세 논의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OECD 주도로 이루어지는 향후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미국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시점과 방식은 국제적 공조 체계 안에서 국제사회가 협의를 통해 용인된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운명이 안갯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은 여전히 정비해야 할 쟁점들이 있으므로 차제에 제도의 허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116) 가령 Action Plan 1, 5, 13, 14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거나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된 문헌으로는 OECD, *OECD Secretary - General Tax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23, p. 4; OECD, *Harmful Tax Practices - 2024 Peer Review Reports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Rulings*, 2024, p. 224; OECD,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 MAP Peer Review Report, Korea(Stage 2)*, 2020, pp. 10-11;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 - Compilation of 2025 Peer Review Reports*, 2025, p. 141 참조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지현,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에 따른 국내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1.
- _____,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40집, 2024.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 배효정,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조세학술논집』, 제41집, 2025.
- 양인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조세학술논집』, 제39집 제2호, 2023.
- 윤준석, 「글로벌최저한세와 조세 경쟁」, 『조세법연구』 제30권 제3호, 2024.
- 이경근, 「최근 국제조세 규범 제정 동향과 미국의 국제조세 정책 분석」, 『계간 세무사』, 2025.
- 이창희,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 _____, 「조세피난처/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회고와 전망」, 『조세학술논집』, 제38집, 2022.
- 이창희·김정홍·윤지현, 『국제조세법』 제3판, 박영사, 202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 재정동향」, 『재정포럼』 2018년 1월호, 20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 홍병진, 「글로벌최저한세와 R&D」, 『재정포럼』 2024년 7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홍성훈·박수진·이서현,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와 조세전략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7.
- Adam N. Michel, “Bold International Tax Reforms to Counteract the OECD Global Tax,” *CATO Policy Analysis*, No. 968, 2024.
- Daniel Shaviro, “What Are Minimum Taxes, and Why Might One Favor or Disfavor Them?,” *Virginia Tax Review*, Vol. 40, No. 2, 2021.
- Janeba, E., & Schjelderup, G., “The global minimum tax,”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9(3), 2023, pp. 643–663.
- OECD, *OECD Secretary – General Tax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23.
- _____, *Harmful Tax Practices – 2024 Peer Review Reports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Rulings*, 2024.
- _____,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 MAP Peer Review Report, Korea(Stage 2)*, 2020.
- _____, *Country-by-Country Reporting – Compilation of 2025 Peer Review Reports*, 2025.

참고문헌

〈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등

〈보고자료 및 언론기사〉

국세청, 「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보고자료, 2025. 8. 21.

기획재정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2023. 1. 18.

『머니투데이』, 「트럼프 달래기 나선 EU, '15% 법인세' 지침 개정 검토, 2025. 4. 26., <https://news.mt.co.kr/mtview.php?n=2025042609581799534>, 검색일자: 2025. 9. 8.

『조선일보』, 「한국 법인세수 늘려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美 반대로 물건너가나, 2025. 7. 22.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22/USLYFFYMBVD6BMQEV5XXANTUDM/, 검색일자: 2025. 9. 2.

『한국경제』, 「글로벌최저한세 '과속입법' ... 부메랑 되나, 2023. 1. 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1791821>, 검색일자: 2025. 9. 3.

〈웹사이트 자료〉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https://www.nts.go.kr/gmt/cm/cntnts/cntntsView.do?mi=41014&cntntsId=239062>, 검색일자: 2025. 9. 3.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https://blog.naver.com/mosfnet>, 검색일자: 2025. 8. 26.

부록

부 표 1 적격소재국추가세 채택 국가(OECD 적격 평가 통과 기준 46개국)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그리스	2023. 12. 31.	스페인	2023. 12. 31.	헝가리	2023. 12. 31.
남아공	2024. 1. 1.	슬로바키아	2023. 12. 31.	호주	2024. 1. 1.
네덜란드	2023. 12. 31.	슬로베니아	2023. 12. 31.	건지	2025. 1. 1.
노르웨이	2024. 1. 1.	아일랜드	2023. 12. 31.	말레이시아	2025. 1. 1.
덴마크	2023. 12. 31.	영국	2023. 12. 31.	맨섬	2025. 1. 1.
독일	2023. 12. 31.	오스트리아	2023. 12. 31.	바레인	2025. 1. 1.
루마니아	2023. 12. 31.	이탈리아	2023. 12. 31.	브라질	2025. 1. 1.
룩셈부르크	2023. 12. 31.	지브롤터	2024. 1. 1.	싱가포르	2025. 1. 1.
리히텐슈타인	2024. 1. 1.	체코	2023. 12. 31.	아랍에미리트	2025. 1. 1.
바베이도스	2024. 1. 1.	캐나다	2023. 12. 31.	인도네시아	2025. 1. 1.
베트남	2024. 1. 1.	크로아티아	2023. 12. 31.	카타르	2025. 1. 1.
벨기에	2023. 12. 31.	튀르키예	2024. 1. 1.	태국	2025. 1. 1.
북마케도니아	2024. 1. 1.	포르투갈	2024. 1. 1.	홍콩	2025. 1. 1.
불가리아	2023. 12. 31.	폴란드	2024. 1. 1.	일본	2026. 4. 1.
스웨덴	2023. 12. 31.	프랑스	2023. 12. 31.		
스위스	2024. 1. 1.	핀란드	2023. 12. 31.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https://www.nts.go.kr/gmt/cm/cntnts/cntntsView.do?mi=41014&cntntslD=239062>, 검색일자: 2026. 1. 11.

부록

부 표 2 소득산입규칙 도입 국가(OECD 적격 평가 통과 기준 44개국)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그리스	2023. 12. 31.	스페인	2023. 12. 31.	헝가리	2023. 12. 31.
남아공	2024. 1. 1.	슬로베니아	2023. 12. 31.	호주	2024. 1. 1.
네덜란드	2023. 12. 31.	아일랜드	2023. 12. 31.	건지	2025. 1. 1.
노르웨이	2024. 1. 1.	영국	2023. 12. 31.	뉴질랜드	2025. 1. 1.
대한민국	2024. 1. 1.	오스트리아	2023. 12. 31.	말레이시아	2025. 1. 1.
덴마크	2023. 12. 31.	이탈리아	2023. 12. 31.	맨섬	2025. 1. 1.
독일	2023. 12. 31.	일본	2024. 4. 1.	스위스	2025. 1. 1.
루마니아	2023. 12. 31.	체코	2023. 12. 31.	싱가포르	2025. 1. 1.
룩셈부르크	2023. 12. 31.	캐나다	2023. 12. 31.	인도네시아	2025. 1. 1.
리히텐슈타인	2024. 1. 1.	크로아티아	2023. 12. 31.	저지	2025. 1. 1.
베트남	2024. 1. 1.	튀르키예	2024. 1. 1.	지브롤터	2025. 1. 1.
벨기에	2023. 12. 31.	포르투갈	2024. 1. 1.	태국	2025. 1. 1.
북마케도니아	2024. 1. 1.	폴란드	2024. 1. 1.	홍콩	2025. 1. 1.
불가리아	2023. 12. 31.	프랑스	2023. 12. 31.	카타르	2025. 1. 1.
스웨덴	2023. 12. 31.	핀란드	2023. 12. 31.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https://www.nts.go.kr/gmt/cm/cntnts/cntntsView.do?mi=41014&cntntsId=239062>, 검색일자: 2026. 1. 11.

부 표 3 소득산입보완규칙 도입 국가(32개국, OECD 적격심사 미정)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국가	발효일
그리스	2024. 12. 31.	스웨덴	2024. 12. 31.	태국	2025. 1. 1.
네덜란드	2023. 12. 31.	스페인	2025. 1. 1.	튀르키예	2025. 1. 1.
노르웨이	2024. 1. 1.	슬로베니아	2024. 12. 31.	포르투갈	2025. 1. 1.
뉴질랜드	2025. 1. 1.	사이프러스	2025. 1. 1.	폴란드	2025. 1. 1.
대한민국	2025. 1. 1.	아일랜드	2024. 12. 31.	프랑스	2024. 12. 31.
덴마크	2024. 12. 31.	영국	2024. 12. 31.	핀란드	2024. 12. 31.
독일	2024. 12. 31.	오스트리아	2024. 12. 31.	헝가리	2024. 12. 31.
루마니아	2024. 12. 31.	이탈리아	2024. 12. 31.	호주	2025. 1. 1.
룩셈부르크	2024. 12. 31.	체코	2024. 12. 31.	인도네시아	2026. 1. 1.(예정)
벨기에	2024. 12. 31.	캐나다	2024. 12. 31.	일본	2026. 1. 1.(예정)
불가리아	2024. 12. 31.	크로아티아	2024. 12. 31.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https://www.nts.go.kr/gmt/cm/cntnts/cntntsView.do?mi=41014&cntntsId=239062>, 검색일자: 2026. 1. 11.

Kipf

정책토론포트



2025년도 PEMNA 합동분과회의

2025년도 PEMNA 합동분과회의

개요

- ▶ **주 제**
 - 예산분과: 성장지향적 재정정책과 예산관리 개혁(Fiscal Policy and Budget Management Reforms for Growth)
 - 국고회계분과: 정책수행을 위한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ing for Service Delivery)
 - 재정수입분과: 재정수입분과 출범 - 회원국 간 네트워킹 및 분과 우선순위 설정(Launching the R-CoP - Building Connections, Shaping Priorities)
- ▶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19일(수)
- ▶ **장 소** 싱가포르
- ▶ **주 최** 세계은행
-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후 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 **참석자** 120명
 - PEMNA 12개 회원국 재무부 공무원,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전문가
 - 참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14개 회원국 중 12개국 참석)¹⁾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는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예산처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으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참여함

본 회의는 2025년 11월 18일~19일 2일간에 걸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세계은행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 분과별 주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1) 미얀마, 싱가포르 불참



Joint Session

Opening Session

Rofyanto Kurniawan |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허경선 | 아태재정협력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Rofyanto Kurniawan PEMNA 예산분과 의장은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PEMNA 사무국, 세계은행, 개발파트너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회의의 주제인 '성장 지향적 재정정책과 예산관리 개혁'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변동성 관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 지출이 국가 우선순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계획-예산-평가의 사이클을 구축하는 전략적 도구이며, 재정정책은 안정화-자원 배분-소득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PEMNA 3기는 성과기반예산(Performance-Based Budgeting, PBB), 중기재정체계(Medium-Term Fiscal Framework, MTF),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PEMNA 사무국장)은 12개 회원국 대표단과 세계은행, IMF, 개발파트너 전문가들의 참여에 감사와 환영 인사를 전하며, 이번 회의는 PEMNA 2기 종료 이후 첫 대면회의이자 예산·국고회계·재정수입 세 분과가 모인 첫 통합 행사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회의 주제인 재정정책 개혁부터 국내 재원동원(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DRM)은 오늘날 아태지역의 시급한 과제인 성장 둔화,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부합하는 주제이며, PEMNA 3기가 PFM 생태계 내 상호 연계된 요소들을 개혁할 수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Welcoming Remarks

Oleksii Balabushko | The World Bank

- ◆ Oleksii Balabushko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은 PEMNA 3기 출범의 의미를 강조하며 재정 정책·예산·국고·재정수입 분야 전반에서 동료학습을 심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힘

- ◆ 또한 재정수입분과의 공식 출범을 발표하며 이는 각국의 DRM 강화를 위한 조세행정 및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 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PEMNA 네트워크의 포괄적 접근이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 및 회복 탄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본 회의의 후속작업으로 정책브리프나 종합정책보고서와 같은 구체적 산출물의 중대성을 강조함

Speakers for Reflection on PEMNA Phase II

허경선 | 아태재정협력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Ildrim Valley | The World Bank

-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PEMNA 1기와 2기 활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 PEMNA 네트워크는 1기에서 동료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기에는 정책자문서비스와 연구까지 영역을 확장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70회의 행사를 추진하며 활동을 지속하였음
- 그동안의 PEMNA 활동에서 예산분과의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 국고회계분과는 국고 시스템 현대화와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루었음
- 향후 3기에서는 회원국들의 주요 피드백을 반영하여 ▲회의자료 조기 제공 ▲전문가·회원국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기회 확대 ▲연간 계획의 체계적 강화 ▲국제 전문가의 대면 참여 확대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유도 ▲연구 활동과 회의주제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함
- ◆ Ildrim Valley PEMNA 재정수입분과 간사는 2기의 주요 성과로 30회에 달하는 동료학습 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자의 85%가 PEMNA 활동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특히 10개 회원국에서 PEMNA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자국의 PFM 개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고하였음
- 3기에서는 정책자문서비스를 중단하고 네트워크 중심 동료학습에 재집중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연구 활동은 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연속성을 보장하고, 논의 내용을 회원들이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브리프 및 종합정책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예정임
- 3기 모니터링·평가(M&E) 측면에선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소개하며 2028년까지 달성할 3대 핵심 성과지표로 ▲회원국 주도의 개혁 ▲회원국별 PFM 우선순위와 PEMNA 네트워크 간 통합성 ▲일상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식공유 등을 제시하였음

Speaker for PEMNA Phase III: Expected Enhancement and Action Plan

Quyen Hoang Vu | The World Bank

- ◆ Quyen Hoang Vu PEMNA 예산분과 간사는 PEMNA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한 3기 종합계획을 발표함. 3기의 핵심 변화 요소로 재정수입분과의 신설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본과와 동일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운영하게 될 예정임
-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통합 시퀀스(Integrated Sequencing)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 PFM 관련 지식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도입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각 국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도구를 개발할 예정임
- 또한 내년 고위급 총회의 주제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 분과별 주제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예정임
- 외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원국을 대상으로 PEMPAL(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Peer Assisted Learning Network),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와 같은 기타 국제포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함

B-CoP Session.

Fiscal Policy and Budget Management Reforms for Growth

Session 1.

Fiscal Stances in the Current Global and Regional Context

회원국 현황 업데이트

Nur Farhanah Haji Mohd Aus | Brunei
 Lay Sokkheang | Cambodia
 Wahyu Dede Kusuma | Indonesia
 윤영준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사무관
 Sanitphong Singkhaophet | Lao PDR
 Harisha binti Mohd Ahwan | Malaysia
 Densmaa Budragchaa | Mongolia
 Lijie J. Dela Merced | The Philippines
 Thanaporn Rongtim & Ganokporn Soisuvan | Thailand
 Gregorio Soares | Timor-Leste

◆ 예산분과 회원국들은 첫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성장 전망 및 재정 기조를 발표하였음(〈표 1〉참고)

국가	성장 전망	재정 기조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브루나이	• 경제회복 중심	• 장기적 재정 규율을 고려한 확장적 기조	• 석유·가스 외 세입 다각화 • 민간협력사업(PPP) 추진 • 재무정보시스템(TAFIS)의 디지털화
캄보디아	• 2025년 1.5% 성장 • 2026년 5.0% 성장 • 2027년 5.5% 성장	• 점진적 재정건전화	• 오각형 전략(Pentagonal Strategy) 제1단계 • 보편적 의료보장 등 사회보호 확대
인도네시아	• 2026년 5.4% 성장 • 2029년 8% 성장 목표	• 신중하고 유연한 재정 운영	• 8대 국가목표(Asta Cita Agenda) •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 공동 재정 수입 프로그램을 통한 세수 최적화
한국	• 3분기 GDP 1.2% 반등	• 선제적 경기부양 중심 재정기조	• 2025년 추가경정 예산 • 2026년 예산안 • 재정구조 개혁
라오스	• 2024년 실질 GDP 성장률 4.3%	• 재정수입 집중 강화 • 재정규율을 동반한 지출 통제	• 세정 디지털화 •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 및 국고단일계좌(TSA) 현대화
말레이시아	• 2025년 3분기 5.5% • 2026년 4.0~4.5%	• 재정책임을 강조한 균형성장 기조 • 2028년까지 재정적자 3% 미만 목표	• 마다니 경제(Ekonomi MADANI) 프레임워크 •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 실행(RM 4,300억 규모)
필리핀	• 팬데믹 이후 회복	• 성장 촉진을 병행한 재정건전화	• 「세금납부 간소화법」, 「광업재정체계법」,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세입 기반 확충 및 재원 동원 강화 • 「정부효율화법」, 「신정부조달법」, 재정분권(devolution)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지출 효율성 제고
몽골	• 광업부문 수출에 힘입어 2026년 5.7%	• 재정건전화	• 재정지출 GDP 24% 미만 유지
태국	• 2026년 2.0%(둔화전망)	• 확장적·적자 기반 정책	• 2025년 1,570억바트 경기부양책 • Half-Half Plus 프로그램(880억바트 규모 재정지출) • 인적자본 투자
동티모르	• 2025~2026년 비석유 부문 GDP 4.5%	• 재정의 70% 이상 석유기금 의존 • 재정적자 수준 높음	• 2025년 「예산기본법」 • 2027년 부가가치세 도입 계획 중 • ASEAN 가입에 따른 인프라 중심 개발

출처 국가별 예산분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Session 2.

Recent PFM Reforms and Budget Management Practices

Presentation 1

Timothy S. Williamson | The World Bank

- ◆ 세계은행은 지난 25년간 PFM 개혁을 재평가하기 위해 Reimagining Public Finance 이니셔티브를 기획하였으며, 그동안 PFM 개혁이 제도적 정교화와 부처 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속적 비판이 존재했음을 언급함
- ◆ 최근 PFM 개혁과 정책집행 결과사이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여 실질적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문제 중심 접근이 필요함
- ◆ 성과 중심 PFM 개혁은 ▲성과 중심 ▲문제 중심 ▲현지 주도 ▲팀 기반 ▲사람 중심 ▲실행가능성 중심 ▲유연하고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7가지 원칙을 따르며 다음 5단계 절차를 통해 실행됨
 - 구체적인 개발 목표 설정
 - 공공재정의 역할 점검 및 개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핵심 병목요인 식별
 - 병목 해소를 위한 변화이론과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 사용자 중심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해 해결책 개발 및 적용
 - 결과에 초점을 맞춘 실행
- ◆ 해당 개혁은 정기적인 정책·기획·예산 편성 주기를 활용해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상호책무성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기존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회원국 현황 업데이트

Addi Darussalam | Brunei
 Long Chantola | Cambodia
 Akhmad Tamzis Hudi & Hendro Try Widiyanto | Indonesia
 윤영준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사무관
 Thongvilay Senpatham | Lao PDR
 Zulfikri Bin Misnan | Malaysia
 Densmaa Budragchaa | Mongolia
 Romeo Matthew T. Balanquit | Philippines
 Sawitree Thunthontiwat & Ganokporn Soisuwan | Thailand
 Elisabeth Do Rosario Vicente | Timor-Leste
 Nguyen Thi Hai Ha | Vietnam

- ◆ 이후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PFM 개혁을 발표하였음 (<표 2> 참고)

Session 3.

Medium-Term Fiscal Frameworks for High Growth

Presentation 1

Quyen Hoang Vu | The World Bank

- ◆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① 초기 자본축적 단계에서 글로벌 기술과 관행을 도입·확산하는 ‘도입단계’ ②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단계’로의 전환을 거쳐야 하며, 도입단계를 생략한 혁신 중심 전략으로의 조기 전환은 경제 정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 재정 거버넌스는 각국의 발전 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PEMNA 국가들은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공공투자가 필요하지만, 자본산출비율(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ICOR)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강화 및 전략적 분권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 아울러 녹색전환의 경우 재정계획의 복잡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

표 2 회원국별 PFM 개혁과 예산관리 요약

국가	주요 시스템	PFM 개혁 집중영역 및 주요 재정 정책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FIS 2.0(2024년 4월) 전자예산 시스템 새로운 회계과목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통합을 통한 공공재정관리 현대화 재정건전화 및 프로그램 평가 중기재정체계 개발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 태그 통합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위원회 설립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SA 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관리(GDP 40% 미만) 양허성 차관 우선화 성과중심예산으로 전면 전환 사전통제에서 사후책임성 중심으로 전환 프로그램 예산을 중기재정체계 및 중기예산체계와 연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정정보시스템(SPAN) 국가개발기획 정보시스템(KRIS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개혁(법제화, 시너지, 현대화) 추진 성과중심예산을 통한 투명성 제고 하향식 목표와 상향식 비용을 통합한 중기재정지출체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바우처 국가성장펀드 재정구조 혁신 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 대응·성장·구조개혁의 3대 전략 추진 소득 하위 90%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 시드머니 역할 강화 연금 및 재정지출 최적화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정보시스템, DMFAS, TSA 등의 재정시스템 TaxRIS, ASYCUDA 등의 재정수입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2030(2026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 탈피) 2030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입 21% 목표 재정 분권화 및 녹색 공공재정관리 하위 전략 실행 엄격한 지출 통제 및 긴축 조치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반 세정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다니 경제(Ekonomi MADANI) 프레임워크 이행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한 산업 전환 「재정책임법」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보편(blanket) 보조금에서 표적(targeted) 보조금으로 전환 노동시장 개혁 및 지역 격차 해소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재정 요소(KPI/기준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 의무적 공청회 도입 프로그램 기반 예산으로서의 기술적 전환 관련 제도 개혁 및 역량 강화 부처 간 정합성 격차 해소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정성과평가(PEFA) 평가 및 보완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2028년 3단계 PFM 개혁 추진 공공재정성과평가(PEFA) 진단 및 KPI 기반 2026 로드맵 갱신 0~3세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정책 전환 지역 공동 창출 및 맥락 맞춤형 개혁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aiD, ThangRath, Pao Tang 등 디지털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AI 기반 전자예산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 중심 예산·지출 관리에서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 정밀한 정책 표적화를 위한 데이터 통합 부처 간 기획 및 평가 데이터 통합 중복 지출 최소화 및 데이터 정확성 제고
동티모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lan Ba Futuru(성과기반예산 도구) T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이후(Post-Oil) 경제 전환 전략 추진(4세대 개혁) 중기재정체계 제도화 포용적 예산 표시 도입(성평등, 기후 등)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도입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투자·조달 관련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부의 재정 분권 및 집행 권한 위임 제도적 구조조정 적극적 공공투자 지역 불균형 해소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 제도 도입

출처 국가별 예산분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몽골의 경우 약 115억달러, 중국의 경우 약 13.8조달러의 재원이 필요
- ◆ 중국은 단계별 개혁 로드맵을 추진했고, 한국은 전략산업의 민간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성장펀드와 재정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고성장을 위해서는 단일 해법이 아닌 국가별 맥락에 부합하는 적응적 거버넌스가 중요함

Presentation 2

Min Zhao | The World Bank

- ◆ 1978년 이후 중국의 재정개혁은 적응과 문제해결의 연속과정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재정 발전 모델은 신속한 인프라 개발을 가능케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산 외(Off-budget) 차입 증가와 재정 위험 확대를 초래함
-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5년 예산관리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부채를 관리하고, 최근에는 영기준(zero-based) 예산제를 도입하여 경제 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을 강화함
- 일례로 후난성은 지출 메커니즘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제한된 지방 재원에 불구하고 농촌 도로 접근성과 교육성과를 개선한 사례로 소개됨
- ◆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 및 적응적 거버넌스 철학이 회원국들의 복잡한 정책 균형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Presentation 3

Harisah Mohd Ahwan | Malaysia

- ◆ 말레이시아는 중기재정체계를 통해 성장·재정규율·회복력 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6년 4.0~4.5%의 견고한 성장률이 전망됨. 이는 민간소비 확대, 지속적인 투자, 관광 부문의 회복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24~2028년 동안 정부연계투자기업(Government-Linked Investment Companies, GLICs)이 첨단제조-에너지전환-보건 분야에 1,200억링깃(RM)을 투자하는 성장·재정개혁 프로그램(Growth Enhancement and Reform-uP, GEAR-uP)이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언급함
- ◆ 중기재정체계는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축소하고 정부부채 비율을 GDP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책임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함
-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 측면에서는 ▲서비스세율 8%로 인상 ▲양도소득세 도입 ▲대규모 납세자 대상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함
- 지출 측면에서는 보조금 합리화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조금을 데이터 기반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함

T-CoP Session.

Performance Reporting for Service Delivery

Session 1.

Financial Reporting for Service Delivery

Presentation 1

Sungjin Park | IPSASB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²⁾

- ◆ IPSASB는 39개의 발생주의 기반 IPSAS 기준과 3개의 권고 실무지침(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s, RPGs)을 관장하며, 2024-2028년 전략으로 공공부문 재무보고 및 지속가능성 보고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발생주의 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글로벌 채택을 확대함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PFM 체계에 기반하며, IPSASB 모델은 예산·정책결정·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지속가능성 보고의 기반이 되는 발생주의 회계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 ◆ RPG 3은 자발적 성과보고 프레임워크로, 성과중심 정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하였음
- 정부로 하여금 ▲제공 서비스 ▲목표 ▲투입 자원 ▲산출물 및 결과 ▲효율성·효과성 평가를 공개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공식 채택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미 해당 원칙에 맞는 성과보고를 실행 중임

Presentation 2~5

Pom Laiheng | Cambodia
 Vu Thi Thu Trang | Vietnam
 Lailatul Fadzillah Ideris | Malaysia
 Fitra Riadian | Indonesia

-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수행을 위한 재무보고 현황을 발표하였음(〈표 3〉 참고)

표 3 회원국별 정책수행을 위한 재무보고 현황

국가	현재 회계 기준	IPSAS와의 정합성	서비스 제공/성과정보	주요 과제
캄보디아	• 현금주의	• 현금주의 IPSAS • 예산결산법에 의존	• 성과정보는 2026년부터 추가 예정	• 제한적인 차이분석 • 발생주의 전환
베트남	• 수정발생주의	• 베트남 공공부문 회계기준(VPSAS) 21개 중 16개가 IPSAS와 정합	• 재무제표 및 공공서비스 단위 보고서를 통해 제공	• 데이터 완전성 확보 • 다수의 보고기관
말레이시아	• 이중장부(국회보고: 수정현금주의, 내부보고: 발생주의)	• IPSAS 기반의 말레이시아 공공부문 회계기준(MPSAS) 채택(IPSAS 24 포함)	• 예산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제시하고 조정하는 데 중점	• 거래량 과다 • 복잡한 조정과정
인도네시아	• 2015년부터 완전 발생주의	• IPSAS 24와 RPG3의 원칙을 참고하되 국가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중	•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상세 산출물 정보 • 우선순위 프로그램 • 국고 관리 산출물	• 연간 및 다년도 성과 간 정합성 문제 • 시스템 통합 격차

출처 국가별 국고회계분과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

Session 2.

Fiscal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Service Delivery

Presentation 1

Sungjin Park | IPSASB

- ◆ RPG 1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발생주의 재무제표로는 담기 어려운 미래 재정정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비구속적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적용 가능함
- ◆ RPG 1은 미래 현금흐름과 현재 정부정책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해당 항목들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IPSAS 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요소는 ▲예측 기간 ▲현행 정책에 기반한 기초 시나리오 ▲장기 현금 흐름 전망 ▲부채비율 ▲기초재정수지 등 핵심 재정 지표임
- ◆ 전망치가 임의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구학적·정책적 가정과 할인을 가정 등 기초 가정을 함께 공시해야 함
- ◆ 스위스는 RPG 1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선도 사례로 장기 수입·지출 전망의 공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리스크를 통합하고, 탄소세, 인프라 유지비

증가 등 기후완화·적응정책이 장기재정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음

- ◆ IPSASB는 주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기후 리스크가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산 주기 및 성과 모니터링과의 통합이 중요함
- SRSI(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Standard): 기후 관련 공시로 민간 부문의 IFRS S1-S2³⁾와 긴밀히 정합성을 맞춰 상호 운용성을 확보
-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두 번째 공시기준이 후속으로 제정될 예정
- ◆ 또한 최근 개정된 RPG 1과 RPG 3에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RPG 1과 RPG 3 모두에 적용 가능함

Presentation 2

함영준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주무관

- ◆ 한국의 통합 성과관리 체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책임성 제고 ▲근거 기반 예산편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계획 - 예산 - 집행 - 평가 - 환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 ◆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 기준과 방법론 제시 ▲기술적 가이드 제공 ▲부처별 성과 결과의 종합·관리 등 전략적 조정 역할을 수행함

3)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S2)

- ◆ 모든 기관은 성과지표, 목표, 실적, 편차 발생 원인을 포함한 연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및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과지표의 질을 개선하고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음
- ◆ 지난 20년 동안 한국 재정성과관리 체계는 2003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해, 2007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확장을 거쳐 2021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의 전면 업그레이드로 이어짐. 현재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 사용자 친화적이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정보를 제공
 - 국회와 국민을 위해 간결하고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성과 대시보드 구축
- 제도적 연결 강화
 - 성과평가 결과가 국회의 예산심의와 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구조개선
-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
 - dBrain을 통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근거 기반 정책결정 제도화 및 AI 기반 분석 도입으로 예측·모니터링·재정 의사결정 효율성을 강화

- ▲분류체계 간 불일치 제거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공공부문 데이터 신뢰성 향상 등의 목적 하에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요 보고체계를 하나의 통합 구조로 구축해야 함

- ◆ MCoA는 ▲IPSAS 기반 재무보고 ▲GFS ▲예산의 세가지 보고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며,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내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면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MCoA의 주요 원칙: ▲완전성 ▲세분화 ▲다차원성 ▲통합 구조 ▲유연성 ▲확장 가능성
- ◆ 또한 다차원 MCoA는 예산편성의 회계기준(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을 명확히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함
- ◆ 기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등 추가 분류는 핵심 회계 과목표에 직접 포함시키기보다 외부태그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능 확장을 가능하게 함

Session 3.

Multi-dimensional Chart of Accounts for Service Delivery

Presentation 1

João Fonseca | IPSASB

- ◆ 다차원 회계과목표(Multi-dimensional Chart of Accounts, MCoA)는 ▲책임성과 의사결정의 강화,

Presentation 2~4

Quratul Ainn Liyana Marzuki | Malaysia
 Hangger Prihandoko | Indonesia
 Francisco Da Conceicao Guterres | Timor-Leste

- ◆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책수행을 위한 회계과목체계를 발표하였음(<표 4> 참고)

표 4 회원국별 정책수행을 위한 회계과목체계

국가	회계 기준	CoA 구조	서비스 제공 정보	FMIS 통합
말레이시아	• 발생주의 기반 • 이중장부 방식 사용(발생주의 + 수정현금주의)	• 8자리 계정 코드 알파벳 접두어 + 7자리 숫자	• CoA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부문 및 프로그램 별 지출을 쉽게 추출	• 중앙재정시스템 내 이중장부 맵핑 사용
인도네시아	• 발생주의	• 중앙정부: 다중 세그먼트 기반 56자리 CoA 사용 • 지방정부: 45-49자리 CoA 사용	• COFOG 및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	• SPAN(재무부 중앙재정정보시스템), SAKTI(부처 재정정보시스템)이 CoA와 완전 통합
동티모르	• 주로 현금주의 • 향후 발생주의 전환 준비 중	• 5개 구성요소: 기금 출처, 조직, 프로그램 하위 프로그램 활동, 목표, 위치	• 프로그램 하위 프로그램 활동의 구조가 정부의 서비스 제공구조를 직접 반영	• 단일 재정시스템이 통합 CoA를 기반으로 집행·회계·성과보고 전 과정을 수행

출처: 국가별 국고회계분과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CoP Session.

Launching the R-CoP: Building Connections, Shaping Priorities

Session 1.

Welcome and Introduction / Discussion:
PEMNA Network and R-CoP

Presentation

Matthias Kasper | The World Bank

- ◆ 재정수입분과는 발족과 함께 PEMNA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 ◆ 회원국 재정수입 제도 현황 파악 및 향후 재정수입분과 논의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회원국 간 세수-GDP 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주요 도전과제로는 낮은 납세순응도, 부처간 데이터 분절, IT 시스템 노후화, 인력 문제 등이 확인되었음
- 주요 관심분야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 강화, 법·정책 체계 현대화, 납세자 세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제시됨
- 동료학습 부문에서는 국가 사례 발표 및 현장 방문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재정수입분과 핵심 안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도입 확대, 납세자 서비스 개선, 새로운 감사도구 도입 확대 등이 제안되었음

- ◆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행정 효율성 확대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시가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발표자는 세입행정에서 AI 적용은 시기상조이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Session 2.

Ongoing DRM Technical Assistance and Country Priorities

Presentation

Panayiotis Nicolaides | The World Bank

- ◆ 동아시아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GDP 비율, 제한적 인적자본 투자 수준, 좁은 세입 구조, 비공식 부문의 높은 고용률 등으로 장기적 개발전망이 한정적임
- ◆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 확충, 비공식 부문 축소, 교육·보건·기업환경 개선 등 생산성 향상 영역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

- ◆ 아태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DRM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음
- 캄보디아: 소비세 과세, 납세협력비용 조사, 부가 가치세(VAT) 면세 분석, 조세지출 추계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추진
- 라오스: 특별소비세 개혁,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신고서 개정, 국제조세 관련 업무, 세무행정진단도구(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TADAT) 평가 준비 지원
- 인도네시아: 공공재정 검토 기반 세입 강화 프로그램, 자본소득과세, 조세 효율성 분석, 지방세 행정 관련 연구 등
- 필리핀: VAT 면세 분석, 보건 관련 조세 검토, 조세 누진성 평가
- 베트남: 납세순응 위험관리, 디지털화 지원, 세계 인센티브 및 면세제도 전환 검토

Session 3.
Thematic Discussion
- Simplified Tax Regimes for Small Business

Presentation

Christopher Hoy | The World Bank

- ◆ 단순과세제도(Simplified Tax Regimes, STR)는 비 공식성이 높고 행정 역량이 제한된 국가 내 소규모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도구로, 매출기준 과세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당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그러나 STR 설계에는 형평성-세수-단순성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하며 단일 모델로는 모든 목표 달성이 불가함

- ◆ 케냐 STR 분석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소규모 과세제도는 납세자의 기록 유지 능력, 매출 계산 능력, 제도 이해 수준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화된 제도라도 납세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형평성 문제, 준수 오류, 잘못된 신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이어서 발표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태와 STR의 조세체계 내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며, 비공식 사업자의 등록 활성화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개선하고 거래 가시성을 제고함으로써 VAT 성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 행태에 부합하는 STR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Session 4.
Work Programs for 2026


- ◆ 세션 4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며 공통적으로 부처 간 데이터 분절 문제, 실증적 정책결정, 시와 같은 기술 활용 전 기초 시스템 강화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6년 주요 계획으로 동료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Session 5.
Thematic Discussion - Audits

Presentation

Matthias Kasper | The World Bank

- ◆ 아시아 지역 다수 국가가 세수 격차, 낮은 집행 역량, 분절된 IT 시스템, 부정확한 납세자 정보 등으로 효과적인 세무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납세순응 개선이나 억제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실정임

- ◆ 세무조사는 ▲현재 과소신고 적발 ▲조사대상자의 향후 납세순응도 증가 ▲비대상자에 대한 파급효과 억제 효과 등의 행태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도구로 특히 간접효과·파급효과를 통해 직접 추정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조사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대상 선정 ▲선정 방식 ▲조사 품질 ▲조사 형태 ▲파급효과 ▲납세자 인식 등이 있음
- ◆ 조사 효율성의 차이는 조사방식, 시점, 납세자 인식 차원에서 나타남
 - 조사방식: 대면조사는 서면조사에 비해 납세순응 효과가 두 배 정도 높으나 비용이 비교적 높음
 - 시점: 초기 시점 서면조사는 저소득층의 납세순응을 악화시키고 후기 시점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는 대부분 납세순응을 개선함
 - 납세자 인식: 무작위 조사 후 납세자는 조사확률이 낮아졌다고 인식해 납세순응도가 감소하는 반면, 위험 기반 조사 후 납세자는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해 납세순응도가 증가함
- ◆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은 감사 선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존 감독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패턴을 드러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불일치 탐지를 자동화하여 서면조사를 실행하는 식으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함
 - 남아공에서는 주변에 감사가 시행될 경우 비감사 기업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함
 - 잠비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간이과세제도 하에 납세액이 반올림 기준 숫자 구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 감사관과 납세자 간 협상 행태를 포착하였음 

Kipf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불법 체류 외국인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 ◆ 미국 재무부는 2025년 11월 20일, 「개인책임 및 근로 기회조정법」¹⁾(이하 「조정법」이라 함)에 따라, 특정 환급성(certain refundable) 성격을 지닌 개인소득세 공제의 처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s)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²⁾
- 재무부는 조만간 제정안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³⁾, 추가 자녀장려세제(ACTC)⁴⁾,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AOTC)⁵⁾ 등을 포함한 특정 개인소득세 공제의 환급분이 「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연방 공공 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에 해당함을 명확히 할 예정임
- (주요 내용)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부적격 외국인(non-qualified aliens)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됨
-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인을 위해 마련된 조세 혜택(tax benefits)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언급함
- (주요 내용) 재무부는 「이민법(immigration laws)」을 집행하고, 납세자로부터 조성된 혜택(taxpayer-funded benefits)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
-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재무부의 제정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취지의 의견을 발표함⁶⁾
- 재무부는 법무부의 법률적 해석을 반영한 제정안 예고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OBBBA에 따른 자동차대출 이자 공제 지침 발표

- ◆ 미국 재무부-국세청,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법률의 자동차 대출 이자 비과세 조항에 대한 지침 발표(2025. 12. 31.)
-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된 신차를 개인적 용도로서 구매할 때 구매자가 받는 자동차 대출 이자의 공제 혜택과 관련된 것임

1)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Moves to Prevent Abuse of Refundable Tax Credit Benefits by Illegal Aliens," 2025. 11. 2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321>, 검색일자: 2025. 12. 1.

3) Earned Income Tax Credit

4) Additional Child Tax Credit

5)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6) Office of Legal Counsel, Status of the Refundable Portion of Certain Tax Credits as Federal Public Benefits, 2025

-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① 구매 대상 차량이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조립될 것
 - ② 대출이 제1선취특권의 지위를 가질 것
 - ③ 개인 적 용도로 사용될 것 등의 주요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이로 인한 공제 금액의 한도는 연간 최대 10,000 USD까지임
- 재무부와 국세청은 규정안에 대해 2026년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캐나다

2025년 가을 예산안(Budget 2025) 관련 조치 법안 검토

- ◆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5년 11월 4일 제출한 2025년 가을 예산안(Budget 2025)과 관련 법안이 12월 10일 하원 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에 회부됨
-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 인하와 투자 공제 등 과감한 감세 정책과 규제의 철폐를 포함하며, 민간의 투자 활력과 실질 구매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 (개인소득세) 의료업계 근로자 세액공제 신설, 저소득층 자동 세금 신고 도입 및 한계 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필수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 (법인소득세) 신규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비세 및 특별세) 납세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와 국내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유희주택세 및 항공기·선박 대상 사치품세를 전면 폐지함
- 제안된 조치의 영향으로 2029~2030년까지 약 687백만캐나다달러 규모의 세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영국

필라1 이행 일정 재조정 및 디지털서비스세 향방 관련 업데이트

- ◆ 영국 재무부(UK Treasury)는 2025년 12월 4일 공개한 '재무부 이행 경과보고서(Treasury Minutes Progress Report)'를 통해, OECD 필라1 조치의 국내 이행 시점을 기존 목표였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 권고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보고서임
- 보고서는 필라1 관련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적 합의 지연으로 인해 다자적 이행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영국은 필라1 이행 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나, 국제 합의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DST의 향후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함



아일랜드

비극본(Unscripted) 프로그램 제작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

- ◆ 아일랜드 재무부와 문화부는 2026년 1월 4일, EU 최초로 비극본 TV(unscripted programming)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을 발표함
- 이 제도는 리얼리티·다큐멘터리 등 대본 없는 논픽션(Non-fiction) TV 프로그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영화·드라마 등 극본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지원을 보완하는 세제 체계임
- 특정 생산 비용의 20% 또는 1,500만유로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요건, 문화적 테스트, 사전 신청 의무 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프랑스

국내 부가가치세 조항 재정비

- ◆ 프랑스는 일반세법의 국내 부가가치세 조항을 간접세 관련 통합 법전인 CIBS로 이관하기 위해 장관령을 제정함(2025. 12. 17.)
- 이번 재정비는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던 간접세 관련 법령을 통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임
-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세제 체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CIBS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 재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 강화, 가독성 개선, 디지털 조세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
- ‘대가성 거래’의 정의, 불법 활동에 대한 과세 원칙 등 주요 판례를 명문화함
- 산업별로 세율 등의 조항을 정리하고 조문의 길이를 간소화함
- 부가가치세 관련 EU의 이사회 지침을 반영함
- 지침 2025/516: 디지털 보고, 플랫폼 경제, 단일 부가가치세 등록 체계
- 지침 2025/1539: 수입품의 원거리 판매에 대한 과세 관리 지침



독일

연방하원, 2025년 세법 개정안 승인

- ◆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2025년 세법 개정안(Entwurf eines Steueränderungsgesetzes 2025) 초안을 2025년 12월 4일자로 승인함⁷⁾
- 이번에 승인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 조치와 다수 세법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⁸⁾
- 이번 승인으로 정부가 2025년 5월 28일 연정위원회(Koalitionsausschuss)에서 발표한 '독일을 위한 긴급 정책 프로그램(Sofortprogramm für Deutschland)' 내 세제 조치의 입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본 법률안은 여전히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적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제정 여부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 ◆ 독일 재무부(BMF)는 해당 개정안의 초안을 2025년 9월 8일 공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외식업 음식 공급의 부가가치세율 7% 상시 적용, 근로자 통근비 표준공제 상향, 공익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일정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으로 구성됨
 - (소득세) 근로자의 통근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비 표준공제(Entfernungspauschale)를 기존의 구간별 차등 구조에서 벗어나, 1km부터 일률적으로 km당 0.38유로⁹⁾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 이를 통해 단·장거리 통근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고·계산 과정에서의 행정적 복잡성을 완화함
 - 아울러 저소득 원격 근무자를 위한 교통비 이동보조금(Mobilitätsprämie)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동 비용 증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 음식점 및 급식제공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음료 제외)에 적용되던 한시적 경감세율(7%)을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식업계에 대한 조세 지원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킴
 - 세무 행정 측면에서는 연방 중앙 세무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BZSt)이 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서 전자적 통지 방식을 원칙화함
 - 이에 따라 환급 관련 결정 및 정보 제공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우편 송달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됨

7) BFD, "Parliament Approves Tax Amendment Act 2025," 2025.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2-04_de_1.html, 검색일자: 2025. 12. 12.

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teueränderungsgesetz 2025," 2025. 10.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1_Legislaturperiode/2025-10-06-StAendG2025/0-Gesetz.html, 검색일자: 2025. 12. 12.

9) 2025년 12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7원임

- 이는 디지털 기반 세무 행정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됨
- (공익법인 및 비영리 부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e-스포츠를 공익 목적 활동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변화된 사회·문화 환경을 반영함
- 또한 공익법인의 비목적사업 수입이 연간 5만유로¹⁰⁾ 이하인 경우 법인세(Körperschaftsteuer)·영업세(Gewerbesteuer) 과세를 제외하도록 하여, 소규모 공익법인의 세무 부담과 관리 비용을 완화함
- 아울러 공익법인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적시 지출 의무'의 예외 한도를 연 10만유로¹¹⁾로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조세 투명성·국제 과세 체계 동시 정비 (DAC8·DAC9·필라2)

- ◆ 독일 정부는 조세 투명성·국제과세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DAC8·DAC9·필라2)
- 독일은 EU의 조세 투명성 강화에 대응하여 DAC8, DAC9, 필라2 체계를 함께 정비함
- 2025년 12월 23일 관련 법령을 공포하여 회원국 이행기한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함
- (DAC8) ① 전자화폐·가상자산의 거래·보유 정보에 대한 보고 ② 자동정보교환 의무를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DAC9·필라2) 「최저한세법」 및 보고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 구조와 GloBE 정보 신고, 자동교환 기준을 정비함
- 이를 통해 독일은 디지털 자산 정보교환과 글로벌 최저한세 보고·교환 체계를 동시에 구축함



이탈리아

DAC8 이행을 위한 입법령 2025년 12월 최종 승인

- ◆ 이탈리아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25년 12월 4일자로 「행정협력지침(Directive 2011/16/EU) 개정 지침(2023/2226)」(DAC8) 이행을 위한 입법령을 최종 승인함¹²⁾
- 이탈리아는 2025년 12월 4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EU 행정협력 개정 지침(DAC8, 지침 (EU) 2023/2226)을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한 입법령(Legislative Decree)을 최종 승인함
- 이는 2025년 10월 예비 승인 이후, 관련 의회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조치임
- DAC8은 EU 회원국 간 암호자산(crypto-assets)에 관한 정보의 자동교환(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규정하는 제도

10) 2025년 12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53만원임

11) 2025년 12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306만원임

12)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Legislative Decree Implementing DAC8," 2025.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2-05_it_2.html, 검색일자: 2025. 12. 12.

- 로, 직접세 분야 행정협력지침(Directive 2011/16/EU)의 여덟 번째 개정(DAC8)에 해당함¹³⁾
- 또한, 동 지침은 암호자산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회피·탈루 방지를 위한 자동 정보교환 제도의 법적 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DAC8의 이탈리아 국내 이행은 일반적인 법률 제정 절차가 아닌 정부 주도의 위임입법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조세 정보교환 및 디지털·암호자산 보고 체계의 신속한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됨

2026년도 「예산법」 공포 및 세제개편 보완·수정 규정 시행

- ◆ 이탈리아는 2026년도 「예산법」 공포 및 세제개편 보완·수정 규정을 시행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도 「예산법」(법률 제199/2025호)을 공포하고 세제개편 보완을 위한 입법령 제192/2025호를 시행함(2025. 12. 31.)
- 중·단기 조세정책 방향 설정과 기존 세제개편의 미비점 보완을 병행 추진함
- (소득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IRPEF) 두 번째 과표(28,000~50,000유로)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함
- (고액 이주자 과세) 외국 소득 정액 대체세를 기존 20만유로에서 30만유로로 인상함
- (금융거래세) 세율을 0.2%에서 0.4%로 인상함
- (환경세 연기) 플라스틱세·설탕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함

- (부양가족 정의 정비) 배우자·자녀·동거친족 등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명확화함
- 부양가족 소득 한도는 원칙 2,840.51유로, 24세 미만 자녀는 4,000유로 미만임
- (필라2 정합화) OECD 행정해석에 맞추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정비함
- (보고 의무 제재) GloBE 정보신고 미제출·지연·오류 시 250~2,000유로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도를 신설함

경제재무부, COVID-19 관련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 명확화

- ◆ 이탈리아 경제재무부, COVID-19 관련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을 명확화함
- 이탈리아 경제재무부는 COVID-19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명확화하기 위해 해석 지침(2025. 12. 22.)을 제시함
- 종래 보조금 세액공제의 과세 여부 및 결손금 처리에 관한 해석상 혼선이 존재하였음
- 경제재무부는 COVID-19 지원금을 면세소득·비포함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제3의 범주(tertium genus)로 해석함
- 이에 따라 지원금은 이월결손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비용도 정상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함
- 이를 통해 COVID-19 지원금의 과세 및 결손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

13) European Commission, "DAC8,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tax transparency for crypto-assets)," 2023. 10. 24.,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irective-administrative-cooperation-dac/dac8_en, 검색일자: 2025. 12. 12.



벨기에

원천징수세 환급기간 조정 및 금융기관세 인상 법률 제정

- ◆ 벨기에 의회는 원천징수세 환급 절차 조정과 연간 금융기관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2025. 12. 18.)
-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관보 공포, 환급 절차는 공포일부터, 금융기관세 인상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 ◆ 원천징수세 환급 절차는 공식 불복청구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간 금융기관세 세율을 인상함
- (원천징수세) 과세결정을 통해 고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는 기존의 단순 환급신청 방식이 폐지되고 공식적인 불복청구(bezwaarschrift)를 통해서만 환급 가능함
 - 급여·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납부 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 불복 청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 관련 급여 원천징수세 면제의 불복청구 기간은 3년(예외 사유 5년)
- (금융기관세) 연간 금융기관세 세율의 과세표준을 인상함
 - 500억유로 이하: 0.13231% → 0.15205%
 - 500억유로 초과: 0.17581% → 0.20204%



덴마크

소비세·기업 투자 비용처리·개인소득세 개편안 의견 수렴

- ◆ 덴마크 재무부 산하 조세 부처는 생활물가 부담 완화, 근로·투자 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한 세제개편 법률안 초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개시함(2025. 12. 19.)
- 법률안은 일부 소비세 폐지, 도서에 대한 0% 부가가치세 도입,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기업의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즉시 비용처리 특례를 포함함
- 공개협의를 2025년 12월 19일 개시, 2026년 1월 16일까지 진행, 수정 법률안은 2026년 2월 중 의회에 제출 예정임
- ◆ 소비세·부가가치세 체계 조정,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기업 투자 관련 비용처리 특례를 도입함
- (소비세·간접세) 커피, 초콜릿, 설탕과자류 소비세 폐지, 도서 공급에 대한 0%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개인소득세·상속세) 30세 초과 개인의 운동·음악 교습 비용에 대한 연간 1,750덴마크크로네 한도 소득공제 허용, 고령 근로자 추가 근로공제 적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보충적 유산세 제도(supplementary estate tax)를 폐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기업과세)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건비에 대한 연간 500만덴마크크로네 한도에서 즉시 비용처리 특례 제도를 도입,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인건비부터 적용됨



핀란드

상속세·증여세 감면 확대 법안 채택

- ◆ 핀란드 의회는 2025년 12월 3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HE 94/2025)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¹⁴⁾
- 개정안은 상속세·증여세 과세최저한 인상, 상속세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가사용품 비과세 한도 확대, 미성년자에 대한 가업승계 감면 적용 확장 등을 포함함
- ◆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최소한도가 인상되고, 상속세 납부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상속세 과세최저한¹⁵⁾이 기존 20,000유로¹⁶⁾에서 30,000유로¹⁷⁾로 인상됨
- 증여세 과세최저한이 기존 5,000유로¹⁸⁾에서 7,500유로¹⁹⁾로 상향됨
- 상속세 납부지연 이자율이 기존 3.5%에서 공식 기준금리에 2%를 가산한 이자율로 변경됨
- 가사용품 및 생활용품 비과세 한도가 기존 4,000유로²⁰⁾에서 7,500유로²¹⁾로 확대됨
- ◆ 가업승계 감면 적용대상이 미성년 상속인에게도 확장되어, 법정대리인을 통한 기업 경영의 계속 요건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됨
- 미성년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존 한계를 개선하는 조치임
- 개정으로 인해 가업승계 관련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됨

14) IBFD, "Parliament Adopts Inheritance and Gift Tax Reductions," 2025. 1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2-04_fi_2.html, 검색일자: 2025. 12. 10.

15) 과세최저한(lower limit for tax)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설정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비과세 한도(tax-exempt amount, 이른바 면세점)와는 구별됨

16)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17만원임

17)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26만원임

18)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4만원임

19)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2만원임

20)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6만원임

21) 2025년 1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2만원임

- ◆ 본 개정은 상속·증여세 체계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세목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조정이 이루어진 점에서 납세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됨
- 가업승계 감면 적용 확대에 의해 가족기업 승계 시 제도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필라2 규칙 개정안 의회 제출

- ◆ 핀란드 정부는 필라2 규칙 일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한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2025. 12. 22.)
- 기존 규칙에 대한 경미한 기술적 수정과 OECD 포괄적 이행체계 차원에서 합의된 변경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함
- 필라2 규칙 적용 여부 및 해석에 관한 사전판정 신청 제도를 도입함
- ◆ 필라2 규칙 위반 목적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신설함
- 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여 필라2 규칙 적용을 회피하거나 추가세액을 감소·회피할 명백한 목적의 거래 또는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문제된 거래나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여 필라2 규칙을 적용하는 구조임
- 개정안은 2026년 3월 말 시행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다만, GAAR는 별도의 유예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일본

일본 내각, 2026년 정부예산안 초안 승인

- ◆ 자민당은 출국세 인상을 포함하는 2026년 세제개정안을 제안함(2025. 12. 19.)
-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출국세가 인상될 예정임
-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됨(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 출국세 인상의 이유는 과도한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고 일본 국내 관광 수요 증대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이 목적임
- ◆ 일본 내각은 2026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함(2025. 12. 26.)
- 2026년 예산안 초안은 국가재정의 전체구조, 정책의 중점 분야,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특히 출국세 세수를 관광·외교·국제협력 재원의 한 축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시사함
- 이 예산안 초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임



중국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전면 개편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전면 개편함(2025. 11. 26.)
- 체납세금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납세 순응도 제고를 목적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전면 개편함
 - 개편된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다음 내용이 개편되거나 명문화됨
 - 명단공개주기가 기존의 비정기공개에서 월 단위 정기공개로 변경됨
 - 명단공개 매체를 확대함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전절차를 명문화함
 -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열거함



인도

해외자산·해외소득 자진신고 유도 캠페인 실시

- ◆ 인도 소득세청(Income Tax Department)과 중앙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25년 11월 말, 해외자산 또는 해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자발적인 신고·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캠페인을 개시함²²⁾
- 본 캠페인은 2025년 11월 27일 인도 언론(Times of India)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자료(국제 정보교환 등)를 기반으로 고위험 납세자군을 선별하여 집중 대응하는 것이 특징임
 - 인도 소득세청은 이전 유사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Second NUDGE Campaign”를 공식적으로 추진함
-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몇 년간 ‘데이터 분석 + 행동 유도(nudge)’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병행하고 있음
 - 초기에는 강제조사보다는 ‘자발적인 정정 기회 제공’을 우선함
 -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함
 - 인도공인회계사회(ICAI) 및 산업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함
 -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함
 - 자동정보교환(AEOI), 금융정보보고 등을 결합한 포착능력을 고도화함

22) THE TIMES OF INDIA, "Tax dept launches fresh campaign to nudge those with overseas assets to come clean," 2025. 11. 17.,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tax-dept-launches-fresh-campaign-to-nudge-those-with-overseas-assets-to-come-clean/articleshowprint/125620772.cms>, 검색일자: 2025. 12. 1.

- 인도 세무당국은 2025년 6월까지 수백억루피 규모의 미신고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적발한 실적이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1년 전 실시된 유사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음
- 인도 세무당국은 두바이 투자 관련 자료를 토대로 델리, 뭄바이, 푸네 지역에서 세무조사와 수색을 실시하여 수백억루피 규모의 미신고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였으며 약 1,080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총 4조루피²³⁾의 세금 추징을 결정함
- 당시 약 2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자산 약 2조 9천억루피 및 해외소득 약 1,090억루피²⁴⁾를 가진 하에 신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2차 캠페인을 설계함
- 납세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함²⁵⁾
- 초기 대상자는 보험, 부동산, 금융계좌 등 해외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26 과세연도(2024-25 소득분) 소득세 신고서(ITR)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험 납세자 약 25,000명임
- CBDT는 해외자산 데이터(2024년 기준)를 타 국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선별함
- 이들은 SMS와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통보받게 될 예정임
- 2025년 12월 중순경 캠페인이 추가 확대될 예정임



싱가포르

2026년 모든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일회성 재산세 환급

- ◆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5년 11월 28일, 재산세(Property Tax)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자가 거주(owner-occupied)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one-off) 세금 환급(rebate)을 진행하기로 결정함²⁶⁾
- 해당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market rents) 상승으로 인한 주택의 연간 가치(Annual Values)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임²⁷⁾

23)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조 2,400억원임

24)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050억원임

25) 이는 「Income-tax Act, 1961」 및 「Black Money Act, 2015」상의 의무 사항이며, 해외자산 미신고 시 기준 벌금 1,000만루피(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560만원), 해당 자산 또는 소득 금액의 30% 과세 및 추가로 300%의 가산세 부과 가능

26) IRAS, "Government Will Grant One-Off Property Tax Rebate for All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in 2026," 2025. 11. 28., <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government-will-grant-one-off-property-tax-rebate-for-all-owner-occupied-residential-properties-in-2026>, 검색일자: 2025. 12. 1.

27)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됨

- (환급 규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공임대 주택 (HDB Flats)²⁸⁾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5%, 자가 거주 민영 주택에 대해서는 10%(최대 500싱가포르 달러(SGD))²⁹⁾가 적용될 예정임
- (환급 절차) 2026년 재산세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자동으로 상계(offset) 처리될 예정임
- 2026년도의 재산세 고지서는 2025년 12월부터 SMS 또는 이메일, myTax Portal³⁰⁾ 등을 통해 관련 알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임
- (비개인 납세자) 국세청은 납세자 분류상 개인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공과금 납부용 자동이체 시스템인 GIRO^{31) 32)}를 통해 납부하여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리거나 일회성 공제의 선택을 권장하고 있음
- (개인 납세자) 개인 납세자는 'myTax Portal'에서 eGIRO³³⁾를 신청하면 수 분 내 GIRO를 통한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함
- (가산세)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GIRO 할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5%의 납부 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가 부과됨
- (지원방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납부 기한 도래 전 국세청에 연락하여 납부 계획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재산세 환급 조치로 인해 방 3개 또는 그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월평균 약 2~3SGD,³⁴⁾ 민영 주택 소유 거주자의 절반은 매월 약 6GSD³⁵⁾의 재산세 인상이 예상됨
- 그 외 고가의 민영 주택 소유 거주자의 재산세는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뉴질랜드

주주 대어금에 대한 과세방안 도입 제안

- ◆ 뉴질랜드 국세청은 기업이 주주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이 일정 기간 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제안함(2025. 12. 4.)
- 뉴질랜드는 소규모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현금 흐름을 관리하면서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주주 대어금 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됨

28)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 Development Board)가 공급하는 공공임대형 주택임

29) 2025년 12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만원임

30) IRAS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세무 거래(tax transactions)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31) abs, "What is GIRO?," <https://www.abs.org.sg/e-payments/giro>, 검색일자: 2025. 12. 1.

32) General Interbank Recurring Order(GIRO)는 주로 정기적이고 금액이 고정된 납부에 유용한 시스템이며, 승인받은 공제를 적용하는 기능도 있음

33) Electronic GIRO의 약자로, 종이서류 기반이었던 GIRO 신청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GIRO 설정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임

34) 2025년 12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00~3,400원임

35) 2025년 12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00원임

- 다만 현행 규정상 일부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을 대출받은 후 신속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납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함
- 주주대여금 형태로 대출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대출이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함
- 국세청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주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시 이를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제안함



OECD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 합의 발표

- ◆ OECD는 2026년 1월 5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의 147개 국가·관할권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조정된 운영을 위한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 핵심 요소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간이계산 특례) 간이 실효세율(simplified ETR)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연결재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단순 계산한 실효세율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실질 기반 세제혜택에 대한 특례) 지출액 및 생산량과 연동된 적격 세제인센티브(qualified tax incentive, QTI)를 대상조세에 가산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함
- (Side-by-Side 병행 체계)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최저세율 과세를 이미 시행 중인 적격 국가에 대해 병행 체계 세이프하버를 허용함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 ◆ EU 이사회, 핀란드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개시 결정(2026. 1. 20.)¹⁾
 - (순지출 증가율 시정 경로 제시) 2028년까지 핀란드의 순지출 명목 증가율은 아래 표에 제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다만 한도 초과분이 GDP의 1.5% 이내이고 기준 연도(2021년) 이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증가분보다 적을 경우 순지출 증가율 한도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
 - ▶ 핀란드는 2028년까지 과도한 재정적자 상황을 해소해야 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EU 이사회는 핀란드에 대한 초과 적자 시정 절차를 개시하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순지출 경로와 일정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
 -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 개시) EU 이사회는 핀란드가 재정수지와 채무 기준²⁾ 중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초과 재정적자가 존재한다고 평가
 - ▶ 핀란드의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4.4%, 2025년은 4.3%로 예상되어 재정준칙 기준(3%)을 상회하고 기준치와 근접한 수준이 아니며, 이는 일시적인 초과가 아니라고 판단
- 이번 결정으로 2026년 1월 기준,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를 적용중인 EU 회원국은 총 10개 국가(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몰타,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임

표 1 핀란드의 순지출 시정경로(순지출 명목 증가율)

(단위: %)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연간 순지출 증가율	1.3	1.5	1.8
누적 순지출 증가율(2024년 대비 총 증가율)	2.5	4.1	5.9

출처 EU 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with the view to bringing an end to the situation of an excessive deficit in Finland," 2026. 1. 12.,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94-2026-INIT/en/pdf>, 검색일자: 2026. 1. 22.

1) EU 이사회, "Stability and Growth Pact: Council open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for Finland," 2026. 1.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1/20/stability-and-growth-pact-council-opens-excessive-deficit-procedure-for-finland/>, 검색일자: 2026. 1. 22.
 _____, "COUNCIL RECOMMENDATION with the view to bringing an end to the situation of an excessive deficit in Finland," 2026. 1. 12.,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94-2026-INIT/en/pdf>, 검색일자: 2026. 1. 22.
 _____, "Council Decision on the existence of an excessive deficit in Finland," 2026. 1. 13.,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93-2026-INIT/en/pdf>, 검색일자: 2026. 1. 22.

2)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는 회원국이 ①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기준(3%)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② GDP 대비 정부 채무 기준(60%)을 초과하고, 기준치와의 차이를 충분한 속도로 줄이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개시될 수 있음.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반 위험이 있는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의 판단 및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 개시를 결정함(EU 공식 법령 웹사이트(EUR-Lex, Glossary of summaries,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glossary/excessive-deficit-procedure-edp.html>), 검색일자: 2026. 1. 22.)

- ◆ EU 통계청, 2025년 3분기 재정통계(재정수지·채무) 발표(2026. 1. 22.)³⁾
- (재정수지) 2025년 3분기 유로지역 20개국과 EU 27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모두 3.2%로 전분기 대비 각각 0.4%p, 0.3%p 증가함
- (채무) 2025년 3분기 말 유로지역 20개국의 일반

정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88.5%로, 전분기 말의 88.2%에 비해 0.3%p 증가했고, EU에서도 81.9%에서 82.1%로 증가함

- 그리스 149.7%, 이탈리아 137.8%, 프랑스 117.7%, 벨기에 107.1%, 스페인 103.2% 순으로 높았고, 에스토니아 22.9%, 룩셈부르크 27.9%, 불가리아 28.4% 순으로 낮았음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5년 3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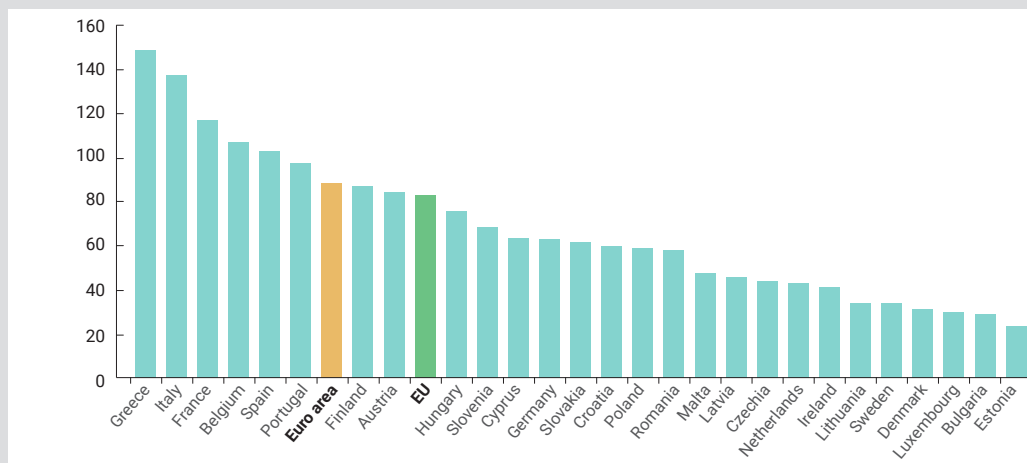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년 3분기	2025년 2분기(잠정)	2025년 3분기(잠정)	전분기 대비(%p)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2.8	-2.8	-3.2	-0.4
총수입	46.8	46.8	46.7	-0.1
총지출	49.7	49.5	49.9	0.4
EU				
재정수지	-3.0	-2.9	-3.2	-0.3
총수입	46.4	46.3	46.3	0.0
총지출	49.3	49.2	49.5	0.3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EU," 2026.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6-bp>, 검색일자: 2026. 1. 23.

그림 1 2024년 4분기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8.5% of GDP in euro area," 2026.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6-ap>, 검색일자: 2026. 1. 23.

3)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EU," 2026.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6-bp>, 검색일자: 2026. 1. 23.
 _____, "Government debt at 88.5% of GDP in euro area," 2026.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6-ap>, 검색일자: 2026. 1. 23.



IMF

-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Economy : Steady amid Divergent Forces” 발표(2026. 1. 19.)⁴⁾
 - (동향)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이며, 미국 주도의 무역 분쟁과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주목할 만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회복력은 무역 긴장 완화, 예상치를 상회하는 재정 부양책, 완화적인 금융여건, 무역교란에 대응하는 민간부문의 민첩성, 신흥국의 정책 역량 강화, AI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분야의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경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에 3.2%로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3.3%와 비슷한 수준임
 - 금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25.10월 WEO) 전망 대비, 2026년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향조정(0.2%p 상향)되었으며, 2027년은 변동이 없음
 - (선진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에 1.7%로 예상
 - (미국) 재정정책과 낮아진 정책금리에 힘입어 2026년에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2.0%로 전망
 - (유로지역) 2026년 1.3%, 2027년 1.4%로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독일의 공공지출 확대와 아일랜드, 스페인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인
 - (일본) 2025년 1.1%로 예상되며, 2026년 0.7%에서 2027년 0.6%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조치와 정책은행(policy bank)의 대출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2025년 5.0%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4.5%로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3.8%, 2027년에는 3.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2025년 10월 WEO 전망과 대체로 변함없음)되며, 수요 둔화 및 에너지 가격 약세라는 기존의 주요 추세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
 - (위험)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특정 부문의 성과와 통화·재정 완화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부문별 충격이나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6*, 2026. 1. 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6/01/19/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6>, 검색일자: 2026. 1. 21.

표 3 2026년 1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구분	추정		전망		2025년 10월 전망 대비 ¹⁾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6년	2027년
세계 경제	3.3	3.3	3.3	3.2	0.2	0.0
선진국	1.8	1.7	1.8	1.7	0.2	0.0
미국	2.8	2.1	2.4	2.0	0.3	-0.1
유로지역 ²⁾	0.9	1.4	1.3	1.4	0.1	0.0
독일	-0.5	0.2	1.1	1.5	0.2	0.0
프랑스	1.1	0.8	1.0	1.2	0.1	0.0
이탈리아	0.7	0.5	0.7	0.7	-0.1	0.1
스페인	3.5	2.9	2.3	1.9	0.3	0.2
일본	-0.2	1.1	0.7	0.6	0.1	0.0
영국	1.1	1.4	1.3	1.5	0.0	0.0
캐나다	2.0	1.6	1.6	1.9	0.1	0.0
그 외 선진국 ³⁾	2.3	1.8	2.0	2.1	0.0	0.0
한국	2.0	1.0	1.9	2.1	0.1	-0.1
신흥개도국	4.3	4.4	4.2	4.1	0.2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5.3	5.4	5.0	4.8	0.3	0.0
중국	5.0	5.0	4.5	4.0	0.3	-0.2
인도 ⁴⁾	6.5	7.3	6.4	6.4	0.2	0.0
유럽 신흥개도국	3.5	2.0	2.3	2.4	0.1	0.0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	2.4	2.2	2.7	-0.1	0.1
중동 및 중앙 아시아	2.7	3.7	3.9	4.0	0.1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1	4.4	4.6	4.6	0.2	0.1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⁵⁾	3.6	4.1	2.6	3.1	0.3	0.0
선진국	2.0	3.0	1.9	2.4	0.4	0.2
신흥개도국	6.3	5.7	3.6	4.4	0.0	0.0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⁶⁾	-1.8	-14.2	-8.5	0.1	-4.0	0.3
비연료	3.7	9.4	7.5	0.9	3.4	0.3
세계소비자물가 ⁷⁾	5.8	4.1	3.8	3.4	0.1	0.0
선진국 ⁸⁾	2.6	2.5	2.2	2.1	0.0	0.0
신흥개도국 ⁷⁾	7.9	5.2	4.8	4.3	0.1	0.1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5. 10. 21.~2025. 11. 18.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됨

1) 현재 및 2025년 10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5년 10월 WEO 전망 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치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유로 지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은 유로 지역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여섯 개 국가(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를 기반으로 함

3)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4)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4-25회계연도는 2024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2026년 6.3%, 2027년 6.5%임

5)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6)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5. 11. 20. 기준) 기준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6년 62.13달러, 2027년 62.17달러

7) 베네수엘라 제외

8) 물가상승률: 유로지역의 가정 물가상승률은 2026년 1.9%, 2027년 2.0%이며, 일본은 2026년 2.3%, 2027년 2.1%, 미국은 2026년 2.4%, 2027년 2.2%로 가정

출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6, January, Table 1. p. 10(한국 수치는 p. 12 Annex 참고)

- AI 기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가 실망감으로 전환될 경우, 기술 부문 투자 급감 및 소수 빅테크 주도의 주식시장 가치의 장기 조정이 우려
- 원자재 및 기초 소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공급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경제활동 위축 및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중동, 우크라이나 및 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내 분쟁 고조 시, 주요 해운로 및 공급망 마비로 인한 상품 가격 급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책권고)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완충여력(fiscal buffers)을 복원하고, 물가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함
- (재정정책) 공공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재정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국가들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재정수입을 강화하고, 지출을 합리화하며, 지출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 (통화정책)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법적·운영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함
- (구조개혁 등) 노동시장, 교육, 규제 체계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AI 도입, 재생 에너지 투자 등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필요



독일

- ◆ 독일 연방재무부, FY2025 잠정결산 발표(2026. 1. 23.)⁵⁾
- (수입) 신규차입을 제외한 20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수입은 4,286억유로
- (지출) 2025 회계연도 신규차입은 연방정부의 총 지출은 2025년 예산안 목표 대비 70억유로 낮은 4,955억유로
- (신규차입) 2025 회계연도 신규차입은 2025년 예산안 목표보다 149억유로 감소한 669억유로를 기록
- (자본지출) 2025 회계연도의 자본지출(투자)은 868억유로로 2025년 예산안 목표치인 1,156억유로보다 288억유로 낮은 수준

5) 독일 연방재무부, "Haushaltsabschluss 2025 und Start des Sondervermögens: Investitionen laufen an, aber es braucht noch mehr Tempo," 2026. 1.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6/01/2026-01-23-vorlaeufiger-jahresabschluss-bhh-2025.html>, 검색일자: 2026. 1. 26.

- ◆ 독일 연방통계청, 2025년 경제성장률 발표(2026. 1. 15.)⁶⁾
 - (GDP) 독일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년간의 경기침체 이후 성장세로 전환
 - (총부가가치) 2025년 가격조정 거시경제 총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격차가 존재
 - (총고정자본형성) 2025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국방 중심의 공공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0.9%) 및 설비투자(-2.3%)의 부진이 지속
 - (소비지출) 가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4%, 1.5% 증가
 - (노동시장) 2025년 취업자 수는 4,600만명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며,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평가
 - (일반정부 재정) 202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80억유로 감소한 1,070억유로이며, 세입 증가율(5.8%)이 지출 증가율(5.1%)을 상회
- ◆ 독일 연방통계청, 2025년 독일 소비자물가상승률 발표(2026. 1. 16.)⁷⁾
 - (연간) 2025년 독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8% 기록
- ◆ 독일 연방통계청, 2025년 1~3분기 공공재정 적자 발표(2026. 1. 8.)⁸⁾
 - (GDP) 독일의 2025년 1~3분기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한 1조 5,980억유로, 수입은 6.0% 증가한 1조 4,905억유로로 1,076억유로 재정적자를 기록
 -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8%를 기록하면서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
 - 2025년 서비스 분야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3.5%이며, 3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
 - 2025년 1~3분기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6,700만유로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공공예산 전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
 - 2025년 1~3분기 세입은 약 1조 2,85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이는 사회보장기여금(+9.1%) 및 주세(+33.3%) 확대에 기인

6)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5 um 0.2% gewachsen," 2026. 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6/01/PD26_017_811.html?nn=2110, 검색일자: 2026. 1. 16.

7) 독일 연방통계청, "KORREKTUR: Inflationsrate im Jahr 2025 bei +2.2%," 2026. 1.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6/01/PD26_019_611.html?nn=2110, 검색일자: 2026. 1. 20.

8)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bis 3. Quartal 2024 auf 108 Milliarden Euro," 2026. 1. 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6/01/PD26_005_711.html, 검색일자: 2026. 1. 14.



프랑스

- ◆ 프랑스 하원, 2026년 사회보장부문 재정법안(PLFSS) 최종 가결(2025. 12. 16.)⁹⁾
 - 2025년 12월 16일 하원은 사회보장부문 재정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2표, 기권 90표로 최종 가결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194억 유로로 정부 초안 대비 19억유로 증가
 - (세입 부문) 사회보장부문의 세입은 예산법안 대비 54억유로 증가한 6,648억유로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출 부문) 사회보장부문의 세입은 예산법안 대비 73억유로 증가한 6,842억유로로 확정되었으며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 동결안 기각 및 의료비 지출 총액이 상향됨
- ◆ 프랑스 정부, 2026년에 대한 특별예산법안 공포 (2025. 12. 26.)¹⁰⁾
 - ※ 프랑스 「헌법」 제47조 및 「재정조직법」 제4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차년도 예산법을 공포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금을 징수하고 필수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특별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12월 31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함
- (배경) 2026년 예산법안에 대해 양원 동수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합의에 실패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주권부는 2026년 특별 예산법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특별예산법안은 2026년 예산법이 채택될 때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조항이 포함
 - 특별예산법안은 기존 세금 징수 권한 및 중앙정부의 차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세금 교부를 보장
 - (현황) 해당 법안은 12월 23일 하원 및 상원에서 채택되어 12월 26일 공포됨
- ◆ 프랑스 하원, 2026년도 예산법안(PLF 2026)을 「헌법」 제49조3항*에 따라 채택(26. 1. 27.)^{11) 12)}
 - *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일정 총족 시 총리가 지정한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임

9)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6: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2025. 12.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6-adoption-en-lecture-definitive>, 검색일자: 2025. 12. 23.

10) 프랑스 법령포털(Légifrance), "LOI n° 2025-1316 du 26 décembre 2025 spéciale prévue par l'article 45 de la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5. 12. 26.,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3173986>, 검색일자: 2025. 12. 30.

11) 프랑스 하원, "PLF 2026 (nouvelle lecture): rejet des 2 motions de censure déposées après l'engagement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sur la 2nde partie et l'ensemble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art. 49.3)," 2026. 1. 27.,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lf-2026-nouvelle-lecture-depot-de-2-motions-de-censure-a-la-suite-de-l-engagement-de-la-responsabilite-du-gouvernement-sur-la-1ere-partie-art>, 검색일자: 2026. 1. 28.

12)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2026. 1. 28., <https://www.vie-publique.fr/loi/300444-budget-de-letat-2026-projet-de-loi-de-finances-plf-2026>, 검색일자: 2026. 1. 29.

- (배경) 프랑스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총리는 2026년도 예산법안에 대해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기존 방침을 번복하여 예산법안 제정에 하원을 생략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할 것을 계획
- (주요 내용) 채택된 예산안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가결한 여러

수정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319억유로(GDP 대비 5%)를 목표

- (수입) 가계에 대한 증세는 대다수 철회되었으나 기업 과세는 유지
- (지출) 일부 부처 제외 대다수 부처 예산 삭감에 돌입하나 정부안과 달리 농림부가 삭감 예외 부처로 추가되었으며, 일부 지원 정책도 새롭게 포함



호주

- ◆ 호주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반기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표(2025. 12. 17.)¹³⁾
- (경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호주 경제는 민간 중심의 회복세로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고용·투자·실질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있음
- (성장) 호주 경제성장률은 2024-25회계연도 1.4%에서 2025-26 및 2026-27회계연도 2.25%, 2028-29회계연도 2.7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물가) 2022년 정점 대비 크게 하락한 물가상승률은 최근 소폭 반등했으며,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종료, 여행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
- (고용) 2022년 중반 이후 약 1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노동참여율은 정점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2025-26회계연도 및 2026-27회계연도에 4.5% 내외 예상

- (위험)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일부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악화, 미국 관세율 조정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지목
- (재정) 지출 제한 및 우선순위 재조정, 세입 초과분 예산 환원¹⁴⁾ 등의 조치를 통해 전망기간 동안 현금수지 적자와 채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중심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강조
- 2025-26 현금수지 적자는 368억호주달러, 실질 지출 증가율은 2022-23부터 2028-29 연평균 1.7%, 2025-26부터 2028-29까지 4년간 연평균 2.1%로 전망되며, 이번 반기 전망에서 200억호주달러 규모의 지출 절감 및 우선순위 재조정 반영

13)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5-26*, 2025. 12. 17., <https://budget.gov.au/content/myefo/index.htm>, 검색일자: 2025. 12. 17.

14) 예측 대비 초과 세수를 예산에 환원하여 재정적자 및 채무 축소에 사용

- 수취(receipts)는 2028-29까지 PEFO 대비 397억 호주달러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급(payments)은 PEFO 대비 2025-26에 90억호주달러 증가, 2028-29까지 누적 313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채무는 2025-26에 34.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31에 37.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5-36에 33.0%로 하락할 전망



중국

- ◆ 중국 공산당,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개최(2025. 12. 11.)¹⁵⁾
 - (2026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시행, 안정의 유지 및 질적·효율적 발전 추구, 역주기(逆周期)¹⁶⁾ 및 과주기(跨周期)¹⁷⁾ 조정의 강화
 - 5대 필수요소(五个必须)를 통한 이념적 지침 제시¹⁸⁾
 - ① 경제적 잠재력(거대한 시장 규모 및 인구 등) 활용 ② 기존 정책 및 혁신의 조화 ③ 위임 및 관리를 통한 규제 완화 ④ 인적 자본 투자 ⑤ 내부 역량 강화(내수 시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구축)
 - 8가지 중점 추진과제(8项重点任务) 설정
 - ①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② 내수 시장 견고화
 - ③ 신성장 동력 육성 및 확장 ④ 대외 개방 심화 및 시장 개혁 ⑤ 도농 통합 및 지역 협력 증진 ⑥ 녹색 전환 촉진 ⑦ 민생 안정 ⑧ 핵심분야 리스크 해결
 -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질적 제고 도모
 - (재정 정책) 필요한 수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적자·부채·지출 강도를 유지하여, 거시경제 정책의 품질과 실행의 효과성에 중점¹⁹⁾
 - (통화 정책) 경제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 촉진²⁰⁾
 - (부동산 정책) 주택 총수요의 하락 추세에 따라 신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하는 점진적 성장 통제 및 재고 감축 등 공급 최적화와 고품질 부동산 공급 촉구²¹⁾

15)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从中央经济工作会议看“十五”开局之年中国经济着力点」, 2025. 12. 13., <http://www.news.cn/20251212/53665cfc41fc45b8a88b9d447308e019/c.html>, 검색일자: 2025. 12. 23.

16) 경기 침체 시 대출 확대 등 경기 흐름과 반대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여 안정을 도모.

17) 주기를 초월한 장기적 경기 순환 조정을 통한 안정적 발전

18)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第一观察 | 学习领悟中央经济工作会议提出的“五个必须”」, 2025. 12. 11.,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51211/b0c712a67f25481780310406cea8283a/c.html>, 검색일자: 2025. 12. 12.

19)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解码中央经济工作会议 | 持续聚焦重点领域 财政政策“更加积极”」, 2025. 12. 17., <http://www.news.cn/fortune/20251217/3f643bc7592e466d8f986877f398bfff/c.html>, 검색일자: 2025. 12. 23.

20)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聚焦中央经济工作会议 | 明年我国将实施更加积极有为的宏观政策」, 2025. 12. 11., <http://www.news.cn/20251211/df638e14410e4a169cebb34b605bfd98/c.html>, 검색일자: 2025. 12. 23.

21)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聚焦中央经济工作会议 | 我国将着力稳定房地产市场」, 2025. 12. 11., <http://www.news.cn/20251211/ed0e3783365647cc9b1547ddc3e17980/c.html>, 검색일자: 2025. 12. 23.

- (고용 정책) AI 전문가 등 산업 고도화에 따른 신흥 직종 육성으로,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발전까지 고려하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용 친화적 발전 모델 구축²²⁾
- ◆ 중국 국가통계국, 2025년 국가 경제 성과 발표(2026. 1. 19.)²³⁾
 - (전반적 성과) 경제 구조 최적화 및 고품질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 속도 유지
 - (산업역량 증대) 2025년 중국의 산업 부가가치는 41조 7천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년 대비 0.3%p 가속화
 - (내수 시장 강화) 최종 소비 지출의 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전년 대비 5.0%p 증가한 52.0%까지 확대되어,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자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
 -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최적화)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9.4% 증가하고,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과 ‘바이오 기반 소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11.1%와 27.9% 증가하는 등 산업의 고급화 및 지능화, 녹색 전환 추세 강화
 - (신성장 동력 산업 강화) ‘3대 신경제’(신기술, 신산업, 신비즈니스 모델)의 부가가치는 GDP의 18%, 특히 집약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13.38%를 차지하는 등 차세대 정보 기술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 (GDP) 2025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140조위안²⁴⁾
 - 정보 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11.1%)와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10.3%) 분야에서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였으며, 건설업(-1.1%)과 부동산업(0.2%)은 부진
 - (실업률) 도시 평균 실업률은 5.2%로, 당초 목표치인 5.5%를 초과 달성²⁵⁾
 - (가처분 소득) 1인당 명목 가처분 소득은 43,377위안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
 - (소비자 물가지수) 2025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여, 2023년 3월 이후 최고 상승치 기록²⁶⁾
 - (생산자 물가지수) 2025년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는 0.2% 상승하는 등 상반기의 하락 추세에서 회복하는 중
 -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의 하락과 주요 산업의 생산능력 관리 및 시장 경쟁 질서의 전면적인 개선 효과

22) 신화통신,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특별사이트(2025 中央经济工作会议), 「新华网评: 让增长带动就业的链条更畅通」, 2025. 12. 24., <http://www.news.cn/comments/20251224/7c758982e0804e6d8a39a207aebff6f7/c.html>, 검색일자: 2025. 12. 26.

23)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国家统计局局长就2025年全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2026. 1. 19., https://www.stats.gov.cn/sj/sjtd/202601/t20260119_1962345.html, 검색일자: 2026. 1. 26.

24)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5年四季度和全年国内生产总值初步核算结果」, 2026. 1. 20., https://www.stats.gov.cn/sj/zxfb/202601/t20260120_1962349.html, 검색일자: 2026. 1. 26.

25)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王萍萍: 2025年就业形势保持总体稳定」, 2026. 1. 19., https://www.stats.gov.cn/sj/sjtd/202601/t20260119_1962339.html, 검색일자: 2026. 1. 26.

26)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国家统计局城市司首席统计师董莉娟解读2025年12月份CPI和PPI数据」, 2026. 1. 9., https://www.stats.gov.cn/sj/sjtd/202601/t20260109_1962271.html, 검색일자: 2026. 1. 26.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12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56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6년 2월 20일 발행 | 제356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2